

www.ssc.go.k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0.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협의 대상	<p>II. 협의 대상</p> <p>3. 협의 제외 대상</p> <p>●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 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사업에 한함)</p> <p>*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변경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 하되, 급여액수만 증감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신 설 ></p> <p>● <u>사회보장기본법 및 관련법 상 사회보장제도 범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설·변경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u></p>	<p>II. 협의 대상</p> <p>3. 협의 제외 대상</p> <p>●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 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사업에 한함)</p> <p>*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변경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 하되, 급여액수만 증감한 경우 (단, 지원기간/횟수의 확대/축소로 인한 급여액수의 변경은 협의대상)</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p> <p>①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p> <p>②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 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p> <p>● <u>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u></p>
	<p>기타 반려사례</p> <p>• <u>단순 거주 요건(전입신고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u></p>	<p>기타 반려사례</p> <p><삭 제></p>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협의 대상	<p>☞ 예 : 전입세대 지원, 전입신고 기준 정주 생활지원금 지원, 이전기업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 등</p> <p>•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p> <p>☞ 예 : 취약계층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 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시민안전보험 지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저소득층 상해보장지원 등</p> <p>•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정책</p> <p>☞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p> <p>•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아동 등 대한 <u>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u> 대상 지자체 사업</p> <p>☞ 예 :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등 (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협의대상임)</p>	<p>•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p> <p>☞ 예 :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 안전보험 가입 지원, 시민안전보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p> <p>•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정책</p> <p>☞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 개선, <u>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u> 사업 등</p> <p>•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지자체 사업 (중앙부처 사업은 협의대상)</p> <p>☞ 예 :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등 (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협의대상임)</p>
협의 절차	<p>Ⅲ. 협의 절차</p> <p>1. 신설·변경 협의요청</p> <p>●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p> <p>-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u>협의요청서 제출 시 자치단체간의 협의결과나 의견을 첨부</u></p>	<p>Ⅲ. 협의 절차</p> <p>1. 신설·변경 협의요청</p> <p>●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p> <p>-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u>자치단체간의 재정 분담비율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u></p>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협의 절차	<p>* 예) 경기도 〇〇시가 신설하고자 하는 제도의 재원을 경기도가 일부 부담하는 경우 경기도와의 협의결과를 첨부</p> <p>● (협의요청시기) <신 설></p> <p>● (협의기한)</p> <p>2. 협의의 진행</p> <p>● (협의결과 통보) <중략> <신 설></p>	<p>☞ 예) 경기도가 재정분담비율을 광역 30%, 기초 70%로 정하여 복지부에 신설 또는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1개 기초 지자체의 동의여부가 명시된 공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p> <p>● (협의요청기한)</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7월말까지 제출</p> <p>● (협의기간)</p> <p>2. 협의의 진행</p> <p>● (협의결과 통보) <중략></p> <p>-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총괄부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p> <p>● (협의 종료) 복지부가 '재협의' 통보 후 사업추진여부의 미확정 또는 사업미추진 등의 사유로, 협의요청기관이 장기간 (차기년도 12월말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의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협의절차 종료 (다만,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 확정 시 신규로 협의 요청 가능)</p> <p>☞ (예시) '18년 3월 〇〇시 협의요청 이후 복지부 '재협의' 결과가 '18년 5월에 통보되었고 고지한 회신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 회신을 요청(유선안내 등)하였으나, 다음해 '19년 12월말까지 복지부 검토결과에 대한</p>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p>00시의 검토의견이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이 담긴 회신(공문)이 송부되지 않는 경우 '19년 12월31일자로 협의절차를 종료(안내 공문 발송)</p>
<p>협의 절차</p>	<p>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회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 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 (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 회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회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p>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회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 ○ 재협의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회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회가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p style="text-align: center;">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p> <p>o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p>
협의 기준	<p>IV. 협의 기준</p> <p>1. 사업의 타당성 (중략)</p> <p>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p> <p>-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및 성과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2. 기존제도와의 관계 (중략)</p> <p>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p> <p>- <u>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u></p> <p>* 동일수급자는 개인이 아닌 가구로, 예를 들어 출산비용지원에 있어 산모, 배우자, 출생아를 지원하는 경우 유사중복, 노인에 대한 현금지원에 있어 노인 본인에 대한 지원과 부양자에 대한 지원도 유사 중복에 해당</p> <p>5. 기타</p> <p>① <u>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 보장계획</u></p>	<p>IV. 협의 기준</p> <p>1. 사업의 타당성 (중략)</p> <p>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p> <p>-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및 성과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p> <p>- <u>특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여부</u></p> <p>2. 기존제도와의 관계 (중략)</p> <p>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p> <p>- <u>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u></p> <p>- <u>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간,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u></p> <p>5. 기타</p> <p>① <u>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u></p>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계획	<u>지역보건의료계획</u>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계획
이행 점검	<p>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p> <p>1. 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 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 편성지침 개정('16년~)</u>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 (<u>2018.12.31.기준</u>) 참조 - 「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p> <p>1. 이행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u>)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16년~)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 (<u>2019.12.31.기준</u>) 참조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u>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p>3. <u>사업 성과 모니터링 실시 방안</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사업 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p>* 필요시 모니터링 대상 사업 확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시범사업 시행기간 종료 이후 ● (절차) 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평가 시행 후 관련 자료 제출(협의요청기관) → 관련 자료 검토 후 최종 협의 완료 추진(보건복지부) <p>* 사업유형에 따라 복지부가 협의요청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검토내용)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및 자체 성과평과결과 등
	<p>VI. 행정 사항</p> <p>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9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홈페이지→사회보장정보→발간물 <p>2. 2019년 교육 수요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19년 지침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가능 	<p>VI. 행정 사항</p> <p>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화면→전체메뉴→사회보장정보→자료실→발간물 <p>2. 2020년 교육 수요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의 수용성을 높이고, '20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컨설팅 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및 컨설팅 가능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p>행정 사항</p> <p>행정</p>	<p>【2019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 : 방문교육, 강의식(PPT자료 활용)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장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또는 담당사무관) ⊙ 주요내용 : 2019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 요청사업 컨설팅 등 <p>* 강의자료(PPT)는 방문교육 외 지자체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p> <p>●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19년 교육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 (필요시)</p> <p>*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제출</p> <p>< 2019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 수요조사(서식) ></p> <table border="1" data-bbox="411 1467 837 1563"> <thead> <tr> <th>신청 기관</th> <th>교육 일시</th> <th>교육 대상</th> <th>교육 인원</th> <th>교육 장소</th> <th>부서명</th> <th>담당자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신청 기관	교육 일시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p>【2020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교육방법 : 방문교육 또는 컨설팅, 강의식 (PPT자료 활용) 또는 대면회의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장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 (또는 담당공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주요내용 : 2020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 요청사업 컨설팅 등 <p>* 강의자료(PPT)는 방문교육 외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p> <p>- 지자체의 경우,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20년 교육 및 컨설팅 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p> <p>*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또는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제출</p> <p>< 2020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컨설팅 수요조사(서식) ></p> <table border="1" data-bbox="890 1467 1316 1563"> <thead> <tr> <th>신청 기관</th> <th>일시</th> <th>대상</th> <th>인원</th> <th>장소</th> <th>부서명</th> <th>담당자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컨설팅 수행 절차) 컨설팅 요청 (협의 요청기관→복지부) → 컨설팅 수요 확인 후 전문가 검토 의뢰 (복지부→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전문가 컨설팅 실시 (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협의요청기관)</p>	신청 기관	일시	대상	인원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 기관	교육 일시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신청 기관	일시	대상	인원	장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사항	<p>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p> <p>● (중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컨설팅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기획력 강화 및 원활한 협의 이행 지원</p> <p>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p> <p>● (현행과 동일)</p> <p>※ (참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행 안내 (‘19년~)</p> <p>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의 편성 절차」 다. 예산의 조정 (p.366)</p> <p>② 2019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 「제2장 조례의 제정 절차」 3. 관계기관 협의 (p.21)</p>								
행정 사항	<p>●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p> <p>-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u><이하 현행과 동일></u></p>	<p>●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p> <p>-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p>								
<p>【서식 1】</p> <p>【서식 2】</p> <p><내용추가> * 근거</p>	<p>【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p> <p>【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p> <p>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 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작성자</td> <td>○○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td> </tr> <tr> <td>신설/변경여부</td> <td><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td> </tr> <tr> <td>근거</td> <td><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td> </tr> </tbody> </table>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서식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91 481 667 515">구분</th> <th data-bbox="667 481 1300 515">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1 515 667 548"></td> <td data-bbox="667 515 1300 548"><input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td> </tr> <tr> <td data-bbox="491 548 667 824" rowspan="3">사업 유형</td> <td data-bbox="667 548 1300 627">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627 1300 705">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705 1300 824">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td> </tr> <tr> <td data-bbox="491 824 667 1025" rowspan="4">급여</td> <td data-bbox="667 824 1300 880">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td> </tr> <tr> <td data-bbox="667 880 1300 936">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936 1300 992">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td> </tr> <tr> <td data-bbox="667 992 1300 1025"> 횟수 총 _____ 회 </td> </tr> <tr> <td data-bbox="491 1025 667 1417" rowspan="5">전달 체계</td> <td data-bbox="667 1025 1300 1104">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1104 1300 1160">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1160 1300 1216">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1216 1300 1317">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667 1317 1300 1417">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r> <td data-bbox="491 1417 667 1541" rowspan="2">복지 자원</td> <td data-bbox="667 1417 1300 1496">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td> </tr> <tr> <td data-bbox="667 1496 1300 1574">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td> </tr> <tr> <td data-bbox="491 1574 667 1608"> 지원규모 </td> <td data-bbox="667 1574 1300 1608"> 총 _____ 명/가구/개소/개 </td> </tr> <tr> <td data-bbox="491 1608 667 1697">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td> <td data-bbox="667 1608 1300 1697">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_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지원규모	총 _____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구분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_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____%																											
지원규모	총 _____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록1> 2018년 협의완료 안건 (2018.12.12.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	<부록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2019.12.13. 기준) <부록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구분	개정 전(2019년)	개정 후(2020년)
부록	(<u>2018.12.31</u> .기준)	목록(<u>2019.12.31</u> .기준) <부록3~6 <u>현행 동일</u> >

CONTENTS

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II. 협의 대상	5
III. 협의 절차	13
IV. 협의 기준	19
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23
VI. 행정 사항	26

■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신설 제도)	33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변경 제도)	40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47
【서식 4】 회신 양식	48

■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51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89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100
【부록 4】 그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101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103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113

I.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요

1 제도의 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2 제도의 목적

-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간 연계를 통한 조화로운 복지체계 구축 목적
 - 사회보장 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등을 방지하여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성 제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등의 신설·확대 억제 등 국가와 지자체의 합리적 역할분담
- 사회보장 업무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과 제도 운영방안을 폭넓게 검토·분석하여 국가·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추구

3 법적 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013.1.27. 시행, 2012.1.26. 전부개정)**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

■ 사회보장기본법[시행 2018.12.11., 법률 제15885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5조(운영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12.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시행 2018.5.1., 대통령령 제28862호]

제14조(협의의 운용방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법 제26조에 따른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의의 대상기준, 절차 등 세부 운용방안(이하 ‘협의의 운용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대상, 지원 내용, 전달체계 등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업계획
2.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근거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사업의 성과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신설’은 ‘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5.11.30.>

1. 소득, 재산, 연령, 자격 등 대상자 선정기준
2.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

3. 그 밖에 급여 내용, 전달체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이후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운용방안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설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사업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9.>

제16조(협의결과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서가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협이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26조제2항에 따른 협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5.1.>

④ 위원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8.5.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6.9., 2017.7.26., 2018.5.1.>

Ⅱ. 협의 대상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1 사회보장제도

- 협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동법 제3조제1호)’ 및 ‘**평생사회안전망**(동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평생사회안전망)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2 신설·변경의 의미

- (신설)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기획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기관에서 동일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에 해당
 -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기획 또는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도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
- (변경)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 시행중인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중앙사업의 경우),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전달체계 등이 바뀌는 경우(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변경’ 예시

- 1)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 소득기준, 연령,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지원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① 대상자 소득수준 변경 : 중위소득 30%이하 → 중위소득 40% 이하 등
 - 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산정기준 변경 : 소득 →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 소득인정액 등
 - ③ 연령기준변경 : 3세 미만 → 5세 미만, 60세 이상 → 65세 이상 등
 - ④ 가구특성변경 : 청소년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구 등
- 2) 재정부담 수준 변경 : 재원조달방법 등의 재원 변경
 - ① 재원조달방법 변경 : 전액 정부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등
 - ② 국고보조율 변경 : 국고보조율 50% → 국고보조율 60% 등(중앙부처 사업에 한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의 변경은 자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3) 지원수준의 변경 : 급여나 서비스 수준의 확대 또는 축소
 - ① 급여수준 변경 : 1인당 월 5만원 → 월 6만원, 가구당 연 20만원 → 연 30만원 등
 - ② 급여항목의 추가 또는 감소 : 교육비 →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 ③ 급여 형태 변경 : 현금 → 바우처, 현금 → 비용면제 등

4) 전달체계 변경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기관, 제공기관 등의 변경

- ① 급여 신청기관 변경 : 특별행정기관 → 시군구, 공공기관 → 읍면동 등
- ② 급여 제공기관 변경 : 읍면동 → 학교, 고용센터 → 읍면동 등

<‘변경’ 사업 중 협의제외대상>

●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변경’ 사업의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

- ①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단순 변동**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 ②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의 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단, 지원횟수/기간 확대/축소로 인한 급여액수의 변동은 협의대상)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추가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 액수만 증감한 경우**

☞ 예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9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항목 등 사업내용 동일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 ①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②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3 협의 제외 대상

- (민간재원사업)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제도
 - 기부금 지정 사업 등과 같이 지자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전부가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책정된 사업도 협의제외대상임
- (법률/조례안)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 또는 조례안 자체
 -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은 협의대상임
- (단순예산변동)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예산 등의 변동
 - * 물가상승률, 최저보장수준(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급여액수만 변동)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액수'만 변동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 사업에 한함)
 - * 복지부와 협의완료한 사업내용 중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항목 등의 변경 또는 확대 없이 동일 대상에 동일 항목으로 지원하되, 급여액수만 증감한 경우 (단, 지원기간/횟수의 확대/축소로 인한 급여액수의 변경은 협의대상)
 - ☞ 예 : '18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0만원(자부담 3만원) 행복바우처 지급 → '19년 만 30세 이상-만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 연 12만원(자부담 3.6만원) 행복바우처 지급(2만원 증액), 그 외 지원기간 등 사업내용 동일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복지부와 기협의 완료한 동일내용의 사업 중,
 - ① 국회 등의 심의 과정에서 '급여액수'만 변경되어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 ② 협의 당시 연차별 계획에 단계별 대상확대/금액 인상 등이 확정된 경우
-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업무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 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 사회보장시설, 기관, 단체 등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사회보장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을 지칭함
 - ☞ 예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

- 사회보장 관련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령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과 조례 포함
 - * 사회보장 관련법령 페이지 참조
- 고유사업은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 등의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지원, 해당기관의 사업비 지원 등을 의미함
 - ☞ 예 : 지자체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협의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 이용료(본인부담금) 지원은 협의 대상
-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고유사업 이외에 **복지사업 위탁과 사업비 지원은 협의대상임**

사회보장 관련 시설 개폐 및 고유 업무 등 반려사례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강검진비, 사회복지 협의회 사업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교통수당 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경로당 대표자 활동장려수당, 경로당 방역소독 사업,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통합이동진료소 운영 사업,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 등

- **(보훈사업)** 보훈수당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지원사업 (**지자체 사업에 한함, 중앙부처사업은 협의대상**)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적 급여**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지자체 보훈사업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참고)

보훈사업 관련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 관련 사업 대상자 중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및 향후 신규 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지원금액의 반영여부는 중앙부처 담당 사업과 또는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확인 후 지급(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사업지침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등 참고)

-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예산편성사업) 국고보조사업 등 실제 수요 대비 매칭된 사업량이 부족하여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등)으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

☞ 예 : 노인일자리(공익활동)에 대한 지자체 추가예산편성 등

☞ 예 : 기 협의완료한 광역-기초 지자체 매칭 사업 중 기초 지자체의 추가예산편성 등

-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된 지자체 의무사업) 지자체 사업시행에 대한 주요내용(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이 중앙사업지침에 기속되어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지자체 사업(예산만 집행)의 경우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함으로써 협의대상에서 제외

☞ 예 :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또는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 단, 중앙사업지침 내용과 상이(변경, 확대 등)하거나 중앙사업지침이 있으나 포괄적 가이드라인의 수준으로, 주요내용(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수준, 전달체계 등)을 지자체가 정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대상임

☞ 예 : ①지침내용과 상이한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시 추가지원(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일부 추가 지원), ② 세부기준은 지자체가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 지자체 취약계층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노인복지사업 지침에 포괄적 가이드라인 참고) 등

- (단년도 사업)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 (시상금, 인센티브 등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 등)

- 일회성 성격의 주민(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 등도 협의대상에서 제외
- 단, 사업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지속사업으로 확대하여 시행 될 경우 협의대상

- (협의제도 시행 이전 사업) 협의제도 시행('13.1.27)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지속·유지되고 있는 사업

- 제도 시행 이후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협의대상

-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원사업 중 지자체 법정배분사업


-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조직, 기관, 부서의 변경 및 설치·운영

●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기타 반례 사례

-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및 사고 등 사전적 위험의 예방/피해보상/구조지원 사업**
 ☞ 예 :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 지역주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시민안전보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
- **법률(조례 위임 등)에 근거한 지역별 교통 정책**
 ☞ 예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 운행, 100원 버스 사업, 버스공영제, 택시기사 처우개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 등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가 아닌 외국인 대상 지자체 사업 (중앙부처 사업은 협의대상)**
 ☞ 예 :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등 (단,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협의대상임)

 참고 | 사회보장 관련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이돌봄지원법 등
-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의료법, 건강검진기본법,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구강보건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암관리법, 약사법 등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Ⅲ. 협의 절차

1 신설·변경 협의요청

- **(협의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분담 비율에 대한 증빙서류(협약서, 공문 등) 첨부
 - ☞ 예) 경기도가 재정분담비율을 광역 30%, 기초 70%로 정하여 복지부에 신설 또는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31개 기초 지자체의 동의여부가 명시된 공문 등을 첨부하여 제출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 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협의요청기한)**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①항)
 - 4월말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즉시 협의요청서 제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④항)
 - ☞ **실제 사업추진 시기 및 협의검토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한(예시: 사업시행 6개월 전)을 두고 협의를 요청하여 **사전 협의완료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 ※ 단, 사업시행을 바로 앞두고(1~2개월) 요청하는 경우 협의요청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반드시 소명하고 시행시기 유예
 -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③항)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 등으로 제출기한(4.30) 이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부예산안 제출시기, 협의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7월말까지 제출**
- **(협의기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 새로운 제도나 사업의 도입으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쟁점안건**의 경우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
 - ☞ 예 :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이 상당기간 필요한 사업 등
- **(자료보완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에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기관에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⑤항)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 누락 등에 따른 **자료보완 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포함내용)** 협의요청서 제출기관은 (서식 1,2)의 양식에 따라 작성

<참고 :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절 차	주요 내용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 · 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관할 시·도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협의회 검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안전 검토·협의 *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인 협의회 구성·운영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전 :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전 : 최대 6개월 이내 처리 * 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관할 시·도에 동시 문서 시행 (수신지정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

2 협의의 진행

- **(협의절차) 협의요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과정에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을 자문받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협의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협의결과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결과 통보(서식3)
 -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 사무처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협의요청기관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해당 지자체(시군구)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 부서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중앙부처사업**의 경우 협의 총괄부서(기획재정부 예산실)에 협의결과 동시 통보
- **(협의 종료)** 복지부가 '재협의' 통보 후 **사업추진여부의 미확정 또는 사업미추진** 등의 사유로, 협의요청기관이 **장기간 (차기년도 12월말까지)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더 이상 협의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에 대하여 **당해년도의 협의절차 종료** (다만, 구체적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확정 시 **신규로 협의요청 가능**)
 - ☞ (예시) '18년 3월 00시 협의요청 이후 복지부 '재협의' 결과가 '18년 5월에 통보되었고 고지한 회신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회신을 요청(유선안내 등)하였으나, 다음해 '19년 12월말까지 복지부 검토결과에 대한 00시의 검토의견이나 구체적 사업내용 등이 담긴 회신(공문)이 송부되지 않는 경우 '19년 12월31일자로 협의절차를 종료(안내 공문 발송)

검토 결과 유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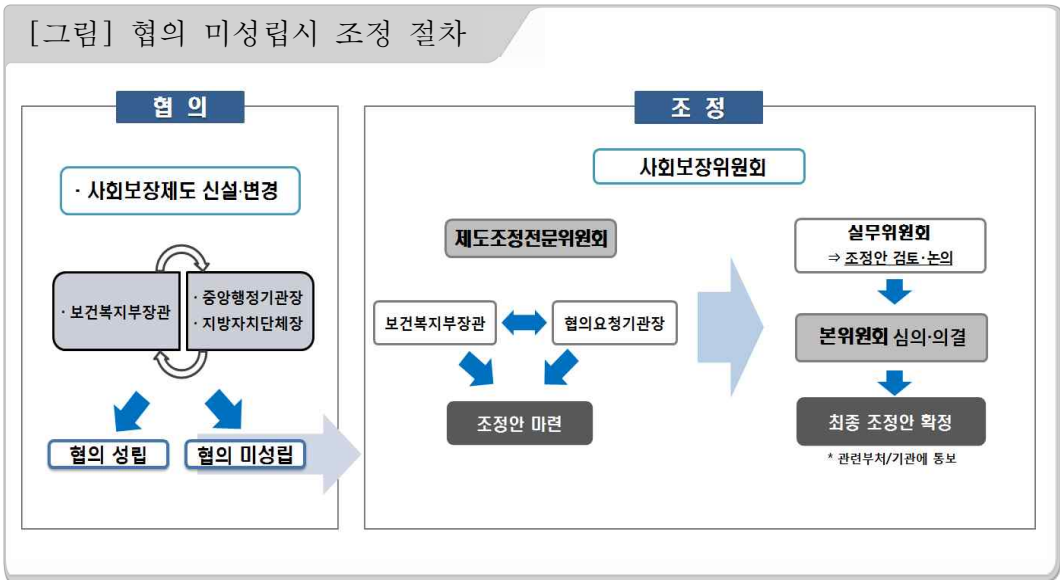
- **협의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검토 결과에서 수정권고 내용이 없거나,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권고 내용을 동의하는 경우에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조건부 협의완료** : 일정기간 사업 시행 및 성과평가 실시 이후 **사업 추진의 지속여부 결정을 조건부로 한시적 사업 추진**에 대한 협의완료
 - * 사업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평가 등을 기반으로 최종 '협의완료'를 위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과의 추가 협의 필요

- **재협의를** :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와의 정합성,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협의기준에 따른 사업내용의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는 등 추가협의 진행**(결과 통보시 고지된 기한 내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협의요청기관의 의견회신요청)
 - 재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어 **협의완료**
 - 재협의를 통해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요청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협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
- **반려** :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

3 조정의 진행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4항)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요청기관 장 간 이견이 있어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 협의·조정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의 절차규정 보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협의 미성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조정을 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의견진술 또는 제출 기회 부여**(동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되고, 해당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함(동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IV. 협의 기준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설·변경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및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진행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유사·중복성 등 검토)	⑤ 사회보장제도 증장기 발전전략 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 를 통한 보충성 확보
3.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 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적정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5. 기타	⑭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증장기적 사업추진 계획 ⑮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⑯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1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

- 사업기획 및 시행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규정이 있는지 여부

*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행하도록 규정 또는 조례로 위임이 되어있는 경우 근거조항 명시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등 지역특수성

-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수요파악 자료 등 지역에서 문제가 대두되게 된 배경이나 경위
 - * 국가 또는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쟁점 여부,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범위와 규모 등
-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지역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사유 등 기존제도의 한계에 대한 평가 내용

③ 사업취지와 사업내용 간의 연계성

-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가 사업목적 및 성과 달성에 가장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등 제도(사업) 도입취지와 사업 내용 간 연계성 확보 여부
- 특히,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수준의 적정성 여부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을 통해 직접 개입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 특히,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제도인 경우 공공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설계 분석 등에 대한 협의기관의 분석결과 연구용역 결과 등 제출

2 기존제도와의 관계

①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 해당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다른 정부위원회 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내용 및 그 결과(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 급여·서비스 제공 여부

-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앙부처 사업 간, 광역-기초 지자체 간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중앙부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 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중복, 편중 여부

③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개별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선정기준의 구체성, 선정기준 적용의 배타성 확보 등)

④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회보험은 국가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할 수 있음

3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①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급여의 통합제공과 제도 간 연계를 위해 새로운 전달체계를 별도로 구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하되 수급대상자·예산규모·사업량에 비례해 인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검토

② 수혜자 접근성(편의), 급여제공의 적시성

- 신청기관의 지역적 분포 검토, 급여·서비스의 제공 기관이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③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 수급대상자에 대한 필요정보(소득, 재산, 자격, 수혜급여 이력 등)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4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①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 비중, 자체사업 예산편성 현황, 자체예산 중 신설·변경 사업예산 비율 등 검토

② 재정집행의 효율성

- 지자체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로 특히 국가사업의 지방비 분담에 문제가 없다는 점 확인

5 기타

① 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적 목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추진 계획

- 주민수요 반영 및 단발성 사업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추진 노력 정도

②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 반영

-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의 경우 적정급여 수준에 대한 추가적 고려 검토

③ 제도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 협의 후 사업시행까지 전달체계 구축, 인력·재원 확보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V.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

1 이행 점검

- **(예산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 및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때에는** 해당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예산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자료요구 및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완료 사항 등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집행 현황 등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협의요청 한 사업의 예산안 의결 현황 제출(관련서식 추후 배포) * 당해연도 협의요청 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제출
- **(중앙부처사업 협의이행 확인)**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예산 편성 후 기획재정부 예산심사 시 **사전협의 결과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예산편성지침 개정('16년~)
 - *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사업) 목록(2019.12.31.기준) 참조
 - 「'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확인 의무화
 -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부서 및 예산담당부서 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부서에 제출
 - ② (예산부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11)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요청 ()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협의대상 포함여부, 협의기준 및 협의요청서 제출기한 등 세부사항은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참조			

2 협의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 등

- (지방교부세 감액)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16.1.1 시행)에 따라 신설·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

지방교부세법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장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의 적용사례 및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를 나열(해당내용은 9호)

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

- (중앙부처 공모사업 배제)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2016년)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협의 의무 위반 지자체에 대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배제 가능('16년~)
- * (20년 예산집행지침) 보조금 교부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준수·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 중앙부처 재량지출 사업비를 배정하거나, 공모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3 사업 성과 모니터링 실시 방안

- (목적)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도입 시, 사업 시행 이후 협의요청기관의 자체 성과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 효과성 및 책임성 제고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조건부 협의완료’ 등을 통보한 사업
 - * 필요시 모니터링 대상 사업 확대 가능
- (시기) 시범사업 시행기간 종료 이후
- (절차) 사업 모니터링 및 자체 성과평가 시행 후 관련 자료 제출(협의요청기관)
 - 관련 자료 검토 후 최종 협의완료 추진(보건복지부)
 - * 사업유형에 따라 복지부가 협의요청기관에 관련자료 제출을 먼저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검토내용)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및 자체 성과평가결과 등

VI. 행정 사항

1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www.ssc.go.kr)**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사회보장위원회’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①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②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협의완료사업 조회가능)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결과검색



③ 그 외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대한 안내

- 메인화면 → 전체메뉴(왼쪽상단) → 신설변경 협의제도 → 신설변경 협의제도 안내

2 2020년 교육 및 컨설팅 수요조사

- **협의를 수용성을 높이고, '20년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컨설팅 수요가 있는 기관의 요청 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방문교육 및 컨설팅 가능**

【2020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안)】

- ◎ **교육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공무원(시도 권역별 교육 원칙)
- ◎ **교육방법** : 방문교육 또는 컨설팅, 강의식(PPT자료 활용) 또는 대면 회의
- ◎ **교육시간** : 1~2시간(요청기관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강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또는 담당공무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 **주요내용** : 2020년 협의 운용지침 설명, 협의요청사업 컨설팅 등
* 강의자료(PPT)는 방문교육 외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체 교육 시 활용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

- 지자체의 경우,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20년 교육 및 컨설팅 수요를 파악, 아래 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에 제출

* 각 시도 협의 총괄부서에서는 시군구 교육 또는 컨설팅 수요조사 결과를 취합·제출

< 2020년 사회보장 협의제도 관련 방문교육·컨설팅 수요조사(서식) >

신청기관	일시	대상	인원	장소	부서명	담당자(연락처)

- **(컨설팅 수행 절차)** 컨설팅 요청(협의요청기관→복지부) → 컨설팅 수요 확인 후 전문가 검토 의뢰(복지부→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전문가 컨설팅 실시(협의지원업무 위탁기관 → 협의요청기관)

* 컨설팅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기획력 강화 및 원활한 협의 이행 지원

3 지자체 협조요청 사항

- 광역-기초 지자체간 사전 정보 공유·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초 지자체에서는 협의요청서(서식 1,2) 제출시 보건복지부와 관할 시도별 협의 총괄부서*에 동시 문서 시행(수신 지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관할 시도 협의 총괄부서)
* [부록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참조

- 지자체 자율적 협의·조정 이행 점검 협조

- 지자체 예산편성 또는 조례제정 단계에서 협의·조정 이행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시행 전 원활한 협의절차 이행 협조

*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조례안·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사업담당 부서 및 예산·법무 부서간 협의이행 여부 확인 등 협조필요

- ① (사업부서) 협의여부·협의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② (예산·법무부서) 지방의회 제출 전, 사전 협의절차 이행여부 확인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이행 여부

※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해당되는 사항에 (V) 표기

구 분	주요내용			
협의요청 사업명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요청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복지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재협의()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기재			

※ (참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이행 안내 ('19년~)

- ①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V. 예산편성 참고자료 「예산의 편성절차」 다. 예산의 조정 (p.366)
- ② 2019년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 「제2장 조례의 제정 절차」 3. 관계기관 협의 (p.21)

-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전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 사전 이행 요청**
 -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행복e음 활용 승인 신청 가능
 - 이에,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 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결과 포함하여 요청
 - * 신설·변경 협의요청서(서식12) 제출(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협의완료 및 협의결과 통보 (서식3)
 - 협의결과를 첨부하여 행복e음 활용 승인 요청(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서 식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① 신설 제도)	33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② 변경 제도)	40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47
[서식 4] 회신 양식	48

【서식 1】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① 신설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신설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____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자원	주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부 소요자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지원규모	총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요청일		제도(사업)의 도입(예상) 시기 / 협의요청일
제도 신설 필요성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성과지표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선정기준선, 자격 요건 등
	대상규모	대상자의 예상 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지원 유형
	지원수준	지원금액, 물량, 이용시간, 지원주기 등
전달 체계	지원절차	신청-조사-대상자결정-급여제공 등 세부 절차 기술
	수행기관	신청기관, 조사·결정기관, 급여(서비스)제공기관 등
소요 재원	총규모	총 재원규모 : 시행 첫해를 포함하여 5년, 연도별 제시(산출근거)
	재원별 규모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민간, 본인부담금 등 재원 유형 및 재원 별 규모(비율)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자격정보 등 필요한 정보 내용, 급여(서비스) 수혜이력(지급실적) 관리 여부 등
	연계 방안	해당 부처의 정보시스템 보유여부 및 시스템 명, 사회보장정보 시스템과 연계 방안,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해결 방안 등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추진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작성 방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성 방법

-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③ 지역의 특수성

- 제도 신설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성 방법

-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 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 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 방법

-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와의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작성 방법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에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지자체 매칭 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 방법

-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small>*사회복지예산 중 국비 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small>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성 방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성 방법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산출근거 제시)
-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성 방법

-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2】 협의요청서 작성 양식 - ② 변경 제도(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변경 제도(사업)명 <1~7번까지 작성 필수>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___회)	
근거	<input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___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__%
지원규모	총 ____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제도의 시행예정일 / 협의요청일	
제도 변경사유		사회문제의 현황과 정책대응의 필요성	
관련규정		관련 법령 및 조문, 관련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		이전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최우선 세부목적
		이후	
성과지표		이전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이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이후	
	대상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이후	
	지원수준	이전	
		이후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이후	
	수행기관	이전	
		이후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변경 전 3년, 연도별로 제시
		이후	변경 후 3년, 연도별로 제시
	재원별 규모	이전	
		이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연계 방안		

※ 협의요청 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해당 제도(사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참고자료 첨부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 변경의 배경 및 당면한 사회적 문제
- 제도의 신설·변경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사항 및 시급성
- 사업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 및 성과
-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관련법 및 조례 등) 및 위법소지 등 사전검토



작성 방법

-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이유 또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이 필요한 이유
- ✓ 한정된 자원 내 정책적 우선순위로 검토된 사항, 사회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예 : 통계적 근거 등)를 제시
- ✓ 사업시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최우선 목적, 사업의 효과성·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사업 시행에 따른 성과관리 계획*등 기술
 - * (중앙부처) 국가재정법 제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제4호 등에 따른 성과계획서
 - * (지자체)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근거한 성과계획서
- ✓ 제도 신설·변경의 법적인 근거(조례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및 조문 제시
- ✓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해당 사회문제 해결에 적절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한 이유를 서술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중앙부처)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 (지자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 및 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작성 방법

-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이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사회보장기본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 확정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가 있는 경우 협의내용을 기재

③ 지역의 특수성

- 제도 변경과 관련된 지역적 문제 및 수요 (타 지역과의 차별성 등)



작성 방법

-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으로 대응하려는 사회문제가 대두하게 된 지역적 배경이나 경위 (예 : 관할지역 내 주민의 복지요구 및 수요 등)를 기술
- ✓ 타 지역과 비교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시급성 및 차별성 기술 (통계적 근거 등 객관적 자료 제시)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제도와 유사·중복성이 있는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대상자 및 급여의 유사·중복·편중·누락 여부 검토
-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앙부처 또는 광역·기초지자체 내 제도를 검토하며, 해당 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



작성 방법

- ✓ 중앙부처 사업 및 동일지역 내에 해당 제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제시
-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기존제도의 분석을 통해 신설·변경하려는 제도와 유사·중복 제도를 검토하고, 현황과 내용을 제시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라 기존의 유사·중복제도를 조정하거나 또는 기존 유사·중복 제도와 역할 분담, 전달체계 협력 등의 연계방안을 제시
- ✓ 기존 사례를 검토하여 해당 제도의 신설·변경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필요한 경우에 해당 제도가 지향하는 방향성과 목표의 근거를 제시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지자체가 국가사업에 대한 보충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급여, 적용범위 등이 사회 보장제도 운영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
- 지자체가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에 대해 대상자 또는 급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경우 기대효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계량화

5.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사업목적과 부합여부, 기존 제도와 유사·중복·편중·누락여부, 대상자 간 형평성 고려 등 대상자 선정기준(제외대상기준 포함)의 적절성 검토
- 신설·변경 제도를 통해서 제공하려는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적절성 검토



작성 방법

- ✓ 제도 변경의 경우 모든 항목을 현행 제도와 변경 제도를 비교하여 제시
- ✓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 ✓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내용, 조사방법, 선정기준선 등 제시
- ✓ 기타 연령(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가구특성(한부모, 입양가구 등), 거주지역 등 부가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조건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제도의 대상자 규모를 통계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향후 5년의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산정하여 기술
- ✓ 현금, 현물,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등 급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금액(현금), 물량(현물), 서비스 내용 및 시간(서비스), 급여·서비스의 제공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 급여 유형, 수준, 내용, 제공 주기 등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고, 제시한 급여를 통해 신설·변경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 서술

6.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제도의 신설·변경이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 관내 기초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작성 방법

- ✓ 신설·변경 제도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의 예산을 변경·조정하는 경우 등 기술
- ✓ 신설·변경 제도로 인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 등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

②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만 작성

-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중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지방(교육)재정공시 참고

< 재정 관련 작성 예시 >

(단위: %, 억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 /b*100) <small>*사회복지예산 중 국비매칭 사업 등을 제외한 지방비 100% 사업</small>

* 협의요청사업 분야에 따라 예산 항목 적용(예, 사회복지, 보건, 교육, 농림해양수산 등)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제도의 신설·변경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대상자의 접근성 등 검토
- 전달체계의 신설·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응방안 마련 계획 등



작성 방법

- ✓ 신청기관(장소) 및 신청 방법,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의 조사 기관 및 조사 방법, 대상자 선정 기관 및 선정 방법, 급여(서비스) 제공 기관 및 제공 방법 등 신청부터 급여(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방법 및 담당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절차별로 담당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담당 기관을 구분하고,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위탁 기관 및 선정 절차 등 서술
- ✓ 제도 변경으로 전달체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급여(서비스)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담당기관 등을 기술
- ✓ 제도 신설·변경으로 업무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및 대응 방안 등 제시
- ✓ 제도 시행(집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 항목 및 기능 제시
- ✓ 신청, 대상자 결정, 급여(서비스) 지급, 사후관리 등 필요한 기능을 기술
- ✓ 해당 부처 정보시스템 유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요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유무 등에 따른 연계 방안 제시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초래되는 재정투입(비용)을 예측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신설·변경 제도에 대한 재정 분담의 적절성 등을 검토
- 신설·변경 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작성 방법

- ✓ 제도의 신설·변경에 따른 모든 재정투입 비용을 세부적으로 제시
- ✓ 사업예산 총 규모, 재원을 국비(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 등),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재원, 본인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기술
- ✓ 지원 대상 규모, 지원 단가 등 세부 내용과 소요 재원간 연관관계를 제시
- ✓ 제도 신설의 경우 향후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기술 (산출근거 제시)
- ✓ 제도 변경의 경우 향후 현행 비용과 5년간의 총 비용과 연도별 비용을 변경 이전과 변경 이후를 구분하여 비교하고, 증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7. 참고자료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서, 중장기 계획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자치법규 등 조문내용 첨부
-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등



작성 방법

- ✓ 특수취약계층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제출
- ✓ 사업 총규모가 있는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 ✓ 참고자료는 협의안건 검토·심의 시 활용되므로 가급적 풍부하게 작성
-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서식 3】 검토결과서 양식 (보건복지부 ⇒ 각 부처, 지자체, 지방의회 사무처)

제도(사업)명

검토결과	협의완료 또는 재협의 등
필수검토사항	협의요청기관이 필수적으로 반영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검토의견	반영여부를 협의요청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서식 4】 회신 양식 (각 부처, 지자체 ⇒ 보건복지부)

제도(사업)명

사업내용	
------	--

검토결과	보건복지부 의견에 대한 협의요청기관의 수용여부 작성
------	------------------------------

복지부 검토의견	
-------------	--

협의요청기관 회신의견	
----------------	--

부 록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 및 결과(2019.12.13. 기준) ·	51
[부록 2]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 기준) ···	89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	100
[부록 4] 그 간('13 - '17)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	101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103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113

【부록 1】

2019년 협의완료 안건(2019.12.13 기준)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	고용 노동부		○	고령자고용연장지원 사업 통합 및 지원요건 변경	협의완료	
2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협의완료	
3			○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협의완료	
4			○	국민취업지원제도	협의완료	
5			○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6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협의완료	
7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협의완료	
8		장애인고용과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재협의 후 완료
9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협의완료
10				○	장애인취업지원(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협의완료
11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12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반려
13				○	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협의완료
14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협의완료
15				○	생활안정자금(용자)	협의완료
16			○	채불청산지원 용자	협의완료	
17	교육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협의완료	
18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협의완료	
19	국토 교통부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협의완료	
20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협의완료	
21			○	주거안정 월세대출	협의완료	
22	금융 위원회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협의완료	
23	농림축산 식품부		○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행복 꾸러미 지원 사업(시범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를결과
24	문화 체육 관광부	예술정책과		○	창작준비금 지원	협의를완료
25		예술정책과		○	창작준비금 지원	협의를완료
26	보건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협의를완료
27		기초생활보장과		○	해산장제급여	협의를완료
28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해산비·장제비 지원)	협의를완료
29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 등 변경	협의를완료
30		기초연금과		○	기초연금지급	협의를완료
31		노인지원과		○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연령기준완화)	협의를완료
32		보육사업기획과		○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육료 지원체계 개편)	협의를완료
33		사회서비스사업과		○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협의를완료
34		사회서비스사업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협의를완료
35		아동권리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협의를완료
36		아동권리과		○	아동발달지원계좌 정부매칭 지원단가 변경	협의를완료
37		아동권리과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협의를완료
38		아동복지정책과		○	아동수당 지급	협의를완료
39		자립지원과		○	청년희망키움통장	협의를완료
40		자립지원과		○	「희망키움통장II(청년저축계좌)」 변경	협의를완료
41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직업전환지원	협의를완료
42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연금	협의를완료
43		지역복지과	○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반려
44		출산정책과		○	저소득층기저귀·조계분유지원사업	협의를완료
45		노인정책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협의를완료
46	사회서비스사업과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지원기간확대 (C형만65세미만요양병원퇴원한의료급여수급자)	협의를완료	
47	질병관리 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임신부 추가지원	협의를완료
48	산업통상 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	에너지바우처	협의를완료
49	여성 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건강지원 (저소득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	협의를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0	강릉시	○		미혼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51	강원도 (본청)	○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52			○	여성농업인 복지마우처 지원사업	협약완료	
53		○		청년구직활동 특별지원	협약완료	
54			○	북한이탈주민 초기 전입 가구 물품 지원	협약완료	
55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재비	협약완료	
56			○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교육	협약완료	
57			○	북한이탈주민 취업자격증 취득	협약완료	
58		○		청년·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59		○		여성임업인 복지마우처 지원사업	협약완료	
60		○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	협약완료	
61			○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가정위탁아동 일부 확대)	재협약 후 완료	
62		강원도 교육청	○		학교 교복 지원 사업	협약완료
63		고성군	○		강원도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협약완료
64		동해시	○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	반려
65	○			행복동해청년희망인턴제	반려	
66	삼척시	○		청년일·경험사회서비스제공	협약완료	
67	양구군	○		두타연갤러리 백자 체험안내자 지원	협약완료	
68	영월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구직활동비 지원)	반려	
69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협약완료	
70		○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협약완료	
71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협약완료	
72		○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협약완료	
73		○		어린이집 누리과정특별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74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지원	협약완료	
75		○		사립유치원(만3~5세)특별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76			○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77			○	출산·입양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8	원주시	○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협의완료	
79		○		사회적경제 청년 점프UP 지원사업 (3유형)	협의완료	
80		○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사업	협의완료	
81		○		“질병감염아동”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82	인제군	○		지역정착지원사업	협의완료	
83		○		청년창업 지원 사업	협의완료	
84		○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협의완료	
85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협의완료	
86	정선군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87	철원군	○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반려	
88	강원도	○		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사업 (1유형)	협의완료	
89		○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취업청년 차량임대차 지원사업	반려	
90		○		컨테이너형 청년창업공간 운영사업	협의완료	
91		○		풀뿌리민주주의활성화를위한주민자치간사 지원사업	협의완료	
92		○		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코디네이터육성	협의완료	
93		○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협의완료	
94		○		(중증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대행	협의완료	
95			○		장애인활동지원 시차체사업	재협의 후 완료
9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예외지원확대)	협의완료	
97		태백시	○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반려
98	○			청년일자리 사업 민간취업연계형	반려	
99			○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협의완료
100	○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협의완료	
101	평창군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102		○		만65세이상 기초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의완료	
103	홍천군	○		방과 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협의완료	
104		○		결혼이민여성 취업인턴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05	강원도	홍천군	○		장애인 등 수도요금 감면	협약완료	
106			○		만60-64세고혈압당뇨병등록환자치료비 지원	협약완료	
107		화천군	○		강원도형청년일자리사업 (1유형)	반려	
108			○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약완료	
109		횡성군	○		임신·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협약완료	
110			○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협약완료	
111	경기도	경기도 (본청)	○		LP가스안전지킴이사업	협약완료	
112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사업	반려	
113			○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협약완료	
114			○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반려	
115				○	한방난임사업지원	협약완료	
116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117		경기도 (본청)	○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사업	협약완료	
118			○		근로자 일생활균형 지원	반려	
119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협약완료	
120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협약완료	
121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	협약완료	
12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완료	
123			○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지원 사업	반려	
124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125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126			경기도 교육청		○	고등학교 학교급식비(무상급식) 지원 확대	협약완료
127			고양시	○		좋은일자리플러스사업 고양청년인턴지원사업	협약완료
128				○	출산지원금(지원대상 확대)	협약완료	
129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고양시에외지원 확대 「맘(MOM)편한산후조리지원사업」	협약완료	
130				○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근로보조수당 지원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31	과천시	○		과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반려	
132		○		과천시민 청년 우선채용기업 지원	협의완료	
133	과천시	○		친환경지킴이 청년일자리 사업	반려	
134		○		장애인활동지원	협의완료	
13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 지원 (예외지원확대)	협의완료	
136		○		효행장려금지원	협의완료	
137		○		저소득 노인 효드림 사회활동 지원	협의완료	
138		광명시	○		입양아동 양육수당 추가 지원	협의완료
139			○		아이소망 지원사업	협의완료
140	○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141	○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	협의완료	
142	○			초등학생 복지지원사업	협의완료	
143	광주시	○		청년 Dream-Up사업	반려	
144	구리시	○		노인 목욕 바우처 지원	협의완료	
145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협의완료	
146			○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147	군포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 확대	협의완료	
148		○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149	김포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150		○		임신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151			○	청년 내일옷장 사업	협의완료	
152			○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153			○	출산축하금지원사업	협의완료	
154		○		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사업	협의완료	
155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협의완료	
156	동두천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157	부천시	○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협의완료	
158	성남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원 확대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159	경기도	○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협약완료		
16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I 유형)-교통비	협약완료		
16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I 유형)-역량강화교육지원	반려		
162				하나원수료최초정착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적응을 위한지역상품권지급	협약완료		
163				첫출발 체크림	반려		
164			성남시		성남형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협약완료	
165					청년 전공살리기 프로젝트 사업	협약완료	
166					야~나 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사업	협약완료	
167					“야~ 나 DO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사업(지역정착지원형, 1유형) 참여자 교통비 지급	협약완료	
168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협약완료	
169					“지역 상생형 대학생(청년) 주거안정”(시범)사업	협약완료	
170					만60세이상취약계층대상포진무료예방접종	협약완료	
171				수원시		○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협약완료
172						○ 수원휴먼주택(매입임대주택) 다자녀가구 무상 지원	협약완료
173				시흥시		○ 청년취업디딤돌	반려
174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175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협약완료	
176					○ 장애인 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177			안산시		○ 안산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178					○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협약완료(권고)	
179		○ 임신부와 신생아 생활안전보험 가입 지원		반려			
180	안성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협약완료			
181	안양시		○ 청소년증발급에따른청소년활동지원	반려			
182			○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183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18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협의완료	
185			○	공립유치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이이상, 사립유치원 셋째이이상 원아 유아학비 지원	협의완료	
186			○	법정저소득 및 셋째이이상 원아 입학준비금 지원	협의완료	
18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자격증취득수강료지원사업	협의완료	
188			○	찜질방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 보호	반려	
189		양평군	○	세대간 맞물림을 통한 청년공간 'cog' 활성화 지원사업	협의완료	
190			○	학곡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협의완료	
191			○	청년 면접정장대여 사업	협의완료	
192			○	청년 근로지원금 지원(양평愛 청년통장·가칭)사업	협의완료	
19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협의완료	
194			○	양평군 비인가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협의완료	
195		여주시	○	아동수당 추가 지급(2만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196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신청비용 지원	협의완료	
197		여주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지원	협의완료	
198			○	성인용보행기지원	협의완료	
199			○	여주시 다자녀 수당 지원	협의완료	
200			○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재협의후완료 (조건부)	
201		오산시	○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	협의완료	
202		용인시		○	출산장려금지원확대	협의완료
203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협의완료	
204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205			○	치매감별검사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06			○	치매환자 배회감지기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07	경기도	○		100세 생신 축하금	반려	
208		○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경력단절여성)	협약완료	
209		○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6개월이상참여청년)	협약완료	
210			○	출산장려 등 지원 확대(출산장려금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협약완료	
211		이천시	○		청년내일의 리더사업	반려
212			○		청소년의미래를여는청년일자리사업	협약완료
213		이천시		○	출산축하금 상향조정 및 지원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214		파주시	○		청년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 (민간취업연계형)	반려
215			○		출산가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지원	협약완료
216			○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비 지원	협약완료
217		평택시	○		화장장려금지원	협약완료
218			○		사립유치원셋째아이상교육비지원	협약완료
219			○		복지사각지대 「의료비 지원」	협약완료
2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협약완료
221		포천시	○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협약완료
222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지원	협약완료
223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지원	협약완료
224		하남시	○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사서 파견	협약완료
225				○	장애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확대 시행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226			○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227		화성시	○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사업	협약완료
228			○		노인일자리(노노카페 운영)사업 지원	반려
229			○		저소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협약완료
230	○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협약완료	
231	○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32	거제시	○		거제시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협의완료	
233		○		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협의완료	
234		○		「셋째부터 영아 건강보험 가입」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235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사업	협의완료	
236		○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237		○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238	거창군	○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239		○		교복 지원 사업	협의완료	
240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241			○	출산장려 현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242	경상남도 경상남도 (본청)	○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	협의완료	
243		○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협의완료	
244		○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협의완료	
245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246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협의완료	
247			○	난임부부 한의진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248			○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사업	협의완료	
249		○		학자금 대출 신용유이자 회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250		○		어르신센터 설치 운영 사업	반려	
251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협의완료	
252		○		교복지원 사업	협의완료	
253		○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및 난임진단 검사비 신규 지원	협의완료	
254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255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256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257			○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협의완료	
258		○		임산부 우대금리 상품 개발 지원	협의완료	
259		경상남도교육청		○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260	경상남도	고성군	○	청소년 드림 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261			○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합병증검사 지원	협약완료
262			○	저소득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263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협약완료
264			○	다자녀세대체험놀이지원	협약완료
265			○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266			○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267			김해시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6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협약완료
269		○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확대 지원	협약완료
270		남해군	○	청년잡고(Job Go), 일자리잡고(Job Go)사업	협약완료
271		밀양시	○	청년 k-star 밀양연극아카데미 운영	반려
272			○	청년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	협약완료
273			○	청년 아이(baby)좋은 맘(baby)케어 서비스사업	협약완료
27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협약완료
275			사천시	○	미등록경로당 지원
276		○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277		산청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278			○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279			○	다자녀(3명이상)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280			○	결혼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281			○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282		양산시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	협약완료
283			○	중증장애인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284			○	교복 지원 사업	협약완료
285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여성장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재협약 후 완료
286			○	공영장례 지원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287	의령군	○		취업창업 맞춤형 전문근로교육훈련 지원사업	협의완료	
288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협의완료	
289		○		공영장래 지원	협의완료	
290	진주시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291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292		○		실크, 바이오산업 부흥 프로젝트	협의완료	
293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294	창녕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295		○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296	경상남도	○		장수노인장제비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297		○		장수노인 축하기념품 지원 사업	반려	
298		○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299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 추가지원	협의완료	
300		○		취약계층 및 다자녀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협의완료	
301		창원시	○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02			○		장수노인장제비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303			○		산후 조리중 언니 오빠 돌봄 서비스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04			○		여성마우처 플러스 사업	협의완료
305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확대	협의완료
306			○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 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사업	협의완료
307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308			○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협의완료
309		○		다자녀 무주택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협의완료	
310	통영시	○		청년내일희망일자리사업	협의완료	
311			○	출산지원금 지원	협의완료	
312		○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313	경상남도	하동군	○	휠체어 타고 국·내외 여행 트래블 헬퍼 운영사업	협약완료	
314			○	초등학생 복지지원사업	협약완료	
315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316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317			○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318		함안군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319			○	유치원 원아복 지원	재협약 후 완료	
320		함양군	○	가가호호 어르신 찾아가는 효자효녀사업	협약완료	
321			○	3대가 함께 사는 세대 효도수당 지원	협약완료	
322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약완료	
323		합천군		○	난임부부 지원 확대	협약완료
324			○	합천군 보건복지서비스 인력난 해소사업	협약완료	
325			○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협약완료	
326			○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327		경상북도	경상북도 (본청)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반려
328	○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29	○			도시청년시골과건제	협약완료	
330	○			청년연구인력지원사업	협약완료	
331	○			청년희망사다리 지원	협약완료	
332	○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반려	
333	○			산후조리원서비스비용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334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협약완료	
335	○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협약완료	
336	○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사업	협약완료	
337	○			청년행복주택 디딤돌 사업	협약완료	
338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협약완료	
339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40	경상북도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협의완료	
341		○		신혼부부 임신준비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34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협의완료	
343		경주시	○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및 체육복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344			○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지원	협의완료
345		구미시		○	교복지원	협의완료
346		김천시		○	난임부부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347				○	출산장려금 인상 지원	협의완료
348		문경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협의완료
349			○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협의완료
350		봉화군	○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협의완료
351			○		농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청년매니저 운영사업	협의완료
352			○		농업인 경영안정자금지원	협의완료 (조건부)
353		상주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354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55			○		유치원 급식 지원 사업	협의완료
356		성주군	○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협의완료
357				○	출산·양육금 지원사업 확대	협의완료
358		안동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확대)	협의완료
359			○		출산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360				○	출산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361		영덕군	○		영덕해녀문화 기록화사업	협의완료
362			○		영덕해녀문화 사업(주거비 지원)	반려
363		영덕군	○		영덕해녀문화 기록화사업(4대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364		영양군	○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365		영주시		○	노인목욕비 지원	협의완료
366			○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협의완료
367			○		산후 조리비(산모 건강관리비)지원	협의완료
368			○		유치원 급식경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369	경상북도	○		지역기업 혁신 청년인재 육성사업	협약완료	
370		○		우수 모범기업 청년인턴사업	협약완료	
371		○		청년 K-컬처 인큐베이터 사업	반려	
372		예천군		○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지원	협약완료
373		울진군	○		청년 마을 도우미 지원사업	반려
374				○	출산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375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협약완료
376			○		출산가정 용품 지원	협약완료
377			○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 건강관리 지원	협약완료
378		의성군	○		청년 생활가구 목공예 제작 전문가 양성	협약완료
379			○		지역 사회서비스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38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협약완료
381		청도군	○		아동복지시설 이용·보호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협약완료
382		청송군	○		농민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조건부)
383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협약완료
384	칠곡군	○		칠곡군 군립도서관 청년문화 활동가 육성	협약완료	
385		○		칠곡군 Honeyjob 프로젝트	협약완료	
38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협약완료	
387	광주광역시	○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개별입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협약완료	
388			○	중소기업 청년 취업유지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389		광산구	○		일하고 싶은 청년 취업준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390				○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협약완료
391		광주광역시 (본청)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투라기」 지원사업	협약완료
392			○		긴급아이돌봄센터 운영(24시간제)	반려
393			○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394	광주광역시	북구	○	새내기아빠 건강진단비 지원	반려
395			○	행복결혼 출산준비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396			○	출산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협의완료
397			○	육아맘을 위한 '새싹도다미' 지원 (광주북구형아이돌봄서비스)	협의완료
398		서구	○	인턴형일드림,내일을잡(job)아라	협의완료
399			○	효드림수당지원	협의완료
400			○	중증장애인 맞춤형 돌봄수당	재협의후완료 (사업미추진)
401			○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거주기간 삭제)	협의완료
402	남구	○		드림피아 청년고용 창출사업	반려
403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404	달서구	○		달서청년 착한일자리 사업	반려
405			○	일도 잡고! 행복도 잡고!	협의완료
406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407	달성군	○		청년 3·6·9 일자리 지원 프로젝트	협의완료
408			○	산업단지청년근로자기숙사임차비지원	협의완료
409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410	대구광역시	대구 광역시 (본청)	○	청년 Pre-job 일자리지원사업	반려
411			○	기업부설연구소R&D인력지원사업	협의완료
412			○	청년사업장-청년잇기 "에스매칭"	협의완료
413			○	대구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협의완료
414			○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지원사업	협의완료
415			○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416			○	웰레폰안부확인 사업	협의완료
417			○	작은 결혼식 지원	반려
418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이차보전)	협의완료
419			대구광역시 교육청		○
420		○		교육 바우처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21	대구광역시	○		동구 청년 드림빌리지 조성사업	협약완료
422				벤처 청년+지원사업	협약완료
423				청년 일자리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협약완료
424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425		북구	○	행복북구청년일자리지원사업	반려
426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427		서구	○	청년고용 젊은기업 지원 사업	반려
428			○	잡 매니저 운영 사업	협약완료
429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430		수성구	○	행복수성 청년일자리	협약완료
431			○	창업기업&청년 전문인력 패키지 프로젝트	협약완료
432			○	행복더하기 일자리	협약완료
433			○	수성구관광정보체험센터운영	협약완료
434			○	모명제한국전통문화체험관운영	협약완료
435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436		중구	○	청년희망JOB GO일자리 사업	협약완료
437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438			○	출산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439		대덕구	○	청년 내-일 원정대	협약완료
440	○		장애인 진단 및 검사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441	대전광역시	○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	반려	
442		대전광역시(본청)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협약완료
443			○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육 보조인력 지원사업	협약완료
444			○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협약완료
445			○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협약완료
446			○	건축물 화재 관련 DB구축사업 등 인력 배치	반려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운영		
447	대전광역시	○		차세대 청년스타 기쁨누린 지원사업	반려	
448		○		훈련지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반려	
449		○		대전 청년주도형 일자리 "청기올려" 사업	반려	
450		○		자치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	협의완료	
451		○		IP가스시설 생활 안전지킴이 인턴사용 채용	협의완료	
452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협의완료	
453		○		청년활동가 양성 사업	협의완료	
454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교육지원	협의완료	
455			○	청년창업카드 지원사업	협의완료	
456			○	탈시설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협의완료	
457			○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협의완료	
45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협의완료	
				○	청년희망적금	협의완료
459		대전광역시 교육청	○		초·중·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협의완료
460		동구	○		청년바리스타를위한창업인큐베이팅카페운영사업	협의완료
461			○		다자녀가정 온누리상품권 지원 사업	협의완료
462	서구	○		잡 매니저 운영 사업	협의완료	
463		○		청년활동공간 운영 사업	협의완료	
464	부산광역시	○		강서구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반려	
465		금정구	○		문화예술 청년취업 『청.사.표』	반려
466			○		독서문화분야 청년취업 『행복잡(job)기』	협의완료
467		기장군	○		어린이집 영유아 입학준비금 지원	협의완료
468		기장군	○		모다(多)-일 청년일자리 사업	반려
469			○		치매환자쉼터 및 치매가족카페 운영인력 지원	협의완료
470				○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471				○	경로당 중식비 및 부식비 지원 사업	반려
472		○		경로당 회원 마스크 배부 사업	반려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473	부산광역시	○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 사업	반려		
474		○		유치원초등학교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지원 사업	반려		
475			○	셋째이상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476		기장군	○		재난대비 생명가방 지급사업	반려	
477			○		저소득층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협약완료	
478			남구	○		드래곤밸리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반려
479				○		청년 독서문화 로드뷰	반려
480				○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지원 사업	반려
481		동구	○		어르신 품위유지 수당 지원	협약완료	
482		동래구	○		청년 스마트 인력풀 운영사업	반려	
483			○		청년신(新)잡(job) 지역도서관 지원사업	협약완료	
48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확대)	협약완료	
485				○	출산장려금 지급	협약완료	
486		부산광역시 (본청)	○		어린이집 행정매니저 지원 사업	협약완료	
487			○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돌봄지원사업운영	협약완료	
488			○		부산형 장애인청년인턴 및 현장매니저 등 지원	협약완료	
489			○		장애인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	협약완료	
490			○		우리마을 청년보안관	협약완료	
491			○		가스안전 돌보미사업	협약완료	
492			○		건강상담 매니저 운영	협약완료	
493			○		우리동네 문화이음 사업	협약완료	
494			○		난임지원사업확대	협약완료	
495				○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협약완료	
496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협약완료	
497			○		저소득층 자녀 시력교정 안경 지원사업	협약완료	
498			○		인접지역 연계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급	협약완료	
499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500		○		학자금대출 신용유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01	부산광역시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502		○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사업	협의완료	
503		부산광역시 교육청		○	부산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504		부산진구	○		청년 꿈드림 복지JOB기 운영지원 사업	협의완료
505		부산진구	○		청년 꿈드림 복지JOB기 추가 운영지원 사업	반려
506		북구	○		청년전문크리에이터	반려
507		사상구	○		청년! 활력사상 프로젝트	협의완료
508		사하구	○		감천문화마을 일자리 창출사업	협의완료
509			○		마을재생 청년지원단 운영	협의완료
510			○		신평골목시장 만남터 도시락 사업	협의완료
511			○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지원사업	협의완료
512			○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513		수영구	○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반려
514		연제구	○		청년 행복잡(JOB)기! 희망드림단	반려
515				○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협의완료
516			○		만2세 이상 자녀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급	협의완료
517			○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협의완료
518		연제구	○		고독사위험군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협의완료
519		영도구	○		영도청년일드림 프로젝트	협의완료
520		영도구		○	출산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521		중구	○		로그인 종합사회복지관 청년인턴사업	협의완료
522				○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523			○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들니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524			○		임신 축하금 지원	협의완료
525			○		태아보험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526		진구	○		어린이A형간염예방접종확대지원사업	협의완료
527			○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협의완료
528			○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확대	협약완료
530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선정기준 변경(연령)	협약완료
531				○	저소득노인가구국민건강보험료등지원	협약완료
532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재협약 후 완료
533				○	다자녀가정 출산특별장려금 지원 확대	협약완료
534		강동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535			○		선택예방접종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536			○		선택예방접종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537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38		강북구	○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반려
539		강서구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540		금천구		○	서울특별시기금천구교복지원	협약완료
541		노원구	○		사회적기업 청년인턴쉽사업	협약완료
542			○		온종일 돌봄운영 교사 지원	협약완료
543			○		노원 청년크리에이터 아카데미	협약완료
544			○		노원헬스가디언즈	협약완료
545			○		청년 놀이지도사 양성 및 파견사업	협약완료
546		도봉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지원)	협약완료
547		동대문구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재협약 후 완료
548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협약완료
549		동작구	○		장애인 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550	마포구	○		마포하우징사업 추진	협약완료	
551		○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협약완료	
552		○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사업	협약완료	
553	서대문구	○		효행장려금 지급	협약완료	
554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재협약 후 완료	
555	서울특별시 (본청)		○	서울형 긴급복지	협약완료	
556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557	서울특별시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차지원	협의완료	
558			○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협의완료	
559		○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 생계비 지원	협의완료	
560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	협의완료	
561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울시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562			○	난임시술(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지원	협의완료	
563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반려	
564			○	1인가구 임차보증금 지원	협의완료	
565			○	서울형 긴급복지사업 확대	협의완료	
566			○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협의완료	
567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568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협의완료	
569		서울특별시 교육청		○	2019학년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협의완료
570		서초구		○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지원사업(24시간 지원 확대)	협의완료
571		송파구	○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572	용산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573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협의완료	
574	중구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협의완료	
575			○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협의완료	
576	세종특별자치시		○	출산장려용품 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577			○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의완료	
578			○	공공실버주택(신혼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579			○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580			○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협의완료	
581			○	세종형 장애수당	협의완료	
582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58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중증장애인 희망두드림통장	협약완료
584			○		장애청년 미래준비 급여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58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 지원	협약완료
586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협약완료
587	울산광역시	남구	○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협약완료
588			○		정신장애인 청년 취업지원 카페 운영	협약완료
589				○	「청년 100 워라벨 프로젝트」	협약완료
590		동구		○	출산장려금 지원	협약완료
591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592		울산광역시 (본청)		○	어린이집보육료차액지원	협약완료
593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협약완료
594				○	3자녀이상 출산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협약완료
595		울산광역시 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 ‘꿈이룸센터’ 교통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596	울주군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협약완료	
597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협약완료	
598			○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협약완료	
599			○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600	울주군	○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	협약완료	
601	중구		○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	협약완료	
602			○	중구문화원 운영 지원	협약완료	
603			○	울산중구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인력 육성사업	협약완료	
604			○	찾아가는 행복Dream 문화음악회	협약완료	
605			○	울산음악창작소 운영 지원	협약완료	
606			○	울산큰애기하우스(관광안내소)운영	협약완료	
607			○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협약완료	
608			○	중구 건강지원센터 관절사랑방 운영	협약완료	

연번	협의를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09	울산광역시	중구	○		청년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	협의완료	
610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협의완료	
611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저소득 노인가구 등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협의완료	
612				○	청소년증을 활용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협의완료	
613				○	아동급식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	협의완료	
614		남동구		○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협의완료	
615		동구		○	동구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 사업	협의완료	
616				○	유튜브를 통해 동구를 말하는 "청년홍보단" 조직 사업	협의완료	
617				○	효행수당 지원	협의완료	
618				○	효행수당 지급대상 확대	협의완료	
619				○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원	협의완료	
620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협의완료	
621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622			부평구	○		부평청년인턴사업추진	협의완료
623					○	부평구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 (지원확대)	협의완료
624			서구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협의완료
625		서구		○	우울 조기검진비 지원	협의완료	
626				○	산후조리비 지원	협의완료	
627				○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628				○	손주돌보미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629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63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협의완료	
631	연수구		○	자활근로자 정서적 자활 지원 사업	반려		
632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협의완료		
633			○	고독사 예방 사업	협의완료		
634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반려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635	인천광역시 (본청)	○		지역성장 도약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636		○		청년인턴 취업연계 지원사업	반려	
637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통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638		○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반려	
639			○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협약완료	
640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반려	
641		인천광역시 중구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642			○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차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643			○		의료급여수급 어르신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사업	협약완료
644			○		저소득계층맞춤형소규모집수리지원사업	협약완료
645			○		참여자 성장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	협약완료
646			○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사업	협약완료
647				○	다자녀 양육지원금	협약완료
648		전라남도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협약완료
649	강진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협약완료
650			○		논밭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완료(조건부)
651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652			곡성군	○		농공단지 입주기업 청년지원 사업
653	곡성군		○		곡성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54			○		만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 지원	협약완료
655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협약완료
656	광양시		○		임산부 산전관리 교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657			○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58			○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659				○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약완료
660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61			○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662	광양시	○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자부담 지원	협의완료
663		○		저소득·다자녀가구 누리과정 유아 필요경비 지원(어린이집)	협의완료
664		○		저소득·다자녀가구 누리과정 유아 필요경비 지원(사립유치원)	재협의 후 완료
665		○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의완료
666	나주시	○		청년농업 인턴제	반려
667		○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원사	협의완료
668		○		유아숲체험 보조원 청년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669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670		○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서비스	협의완료
671		○		출산축하용품 지원	협의완료
672	담양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운영	협의완료
673		○		3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사업	협의완료
674		○		만 50세 이상 주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의완료
675		○		인플루엔자무료예방접종대상확대	협의완료
676	목포시	○		목포 청년 잡고(JOB GO) 사업	협의완료
677		○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678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679		○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협의완료
680	무안군	○		무안 디지털메이커 전문가 양성사업	협의완료
681			○	난임 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	협의완료
682	보성군	○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683	순천시		○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사업	협의완료
684		○		아이낳기 좋은도시 순천 출산맘을 위한 비타민D제 지원	협의완료
685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686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687	신안군		○	노인보행보조차지원	재협약 후 완료	
688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약완료	
689	여수시	○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협약완료	
690		○		미등록 경로당 지원	협약완료	
691		○		다문화가족·새터민 문화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692		○		임신헌진비 지원 사업	협약완료	
693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협약완료	
694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695		영광군		○	청년 취업활동 수당	협약완료
696				○	청년희망 플러스 통장 지원사업	협약완료
697	○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협약완료	
698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완료	
699	○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협약완료	
700	영암군	○		농민수당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701	영암군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702	완도군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운영	협약완료	
703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협약완료	
704	장성군	○		공공실버주택 관리지원 사업	협약완료	
705	장흥군		○	난임 시술비 지원	협약완료	
706				다자녀가정 차량 지원	협약완료	
707	전라남도 (본청)	○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	협약완료	
708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	협약완료	
709		○		13개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10		○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협약완료	
711		○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12	전라남도 (본청)		○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개설 운영	협의완료	
713			○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협의완료	
714		○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협의완료 (조건부)	
715		○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	협의완료	
716		○		중증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	협의완료	
717		○		중증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반려	
718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협의완료	
719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대상자 확대)	협의완료	
720		전라남도교육청		○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협의완료
721			○		전라남도교육청 고교 신입생 교과서 지원 사업	협의완료
722	○			고등학교 무상교육(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협의완료	
723	전라남도	○		다자녀 산모 한방첩약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724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매니저 지원사업	협의완료	
725		○		진도군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협의완료	
72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체)사업	협의완료	
727		○		면역 튼튼 어린이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728		○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 지원	협의완료	
729	함평군	○		보금자리 인센티브 지원(II형)	협의완료	
730	해남군	○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영	협의완료	
731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매니저 운영	협의완료	
732		○		청년 스타 유튜버 양성 프로젝트	협의완료	
733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협의완료	
734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재협의 후 완료	
735		○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사업	협의완료(조건부)	
736		○		임신부 영양지원 사업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737	전라남도	해남군	○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	협약완료
738			○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협약완료
739			○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740			○	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협약완료
741			○	교복 지원 사업	협약완료
742			○	「해남군 생활임금」 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74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협약완료
744			화순군	○	폐암검진사업
745	전라북도	고창군	○	주민여행사 투어마스터 지원사업	협약완료
746			○	문화예술기획홍보코디네이터지원사업	협약완료
747			○	농어업법인 청년 일자리 사업	협약완료
748			○	경로 이미용권 지급	협약완료
749			○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750			○	체크림사업 지원사업	반려
751			○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752			고창군	○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753		○		분만진료 비용 지원	협약완료
754		군산시	○	청년수당 지원사업	협약완료
755			○	사회문화서비스 기획자 육성사업	협약완료
756	○		창업매니저 양성 사업	협약완료	
757	○		육아복지가 양성 사업	협약완료	
758	○		노동활동가 양성 사업	협약완료	
759	○		큐레이터 양성 사업	협약완료	
760	○		두레 타운카페 사업	협약완료	
761	○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	협약완료	
762	김제시	○	청년,아토에서길을찾다	협약완료	
763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764	김제시	○		청년인턴사원제 지원사업	협의완료	
765		○		국적취득자 지원사업	협의완료	
766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767	남원시	○		나는 木手다 지역정착 지원사업	협의완료	
768		○		희망심어주시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769		○		청년일자리 매니저	협의완료	
770		○		사회적경제청년매니저육성	협의완료	
771		○		공예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협의완료	
772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액 인상	협의완료	
773			○	아이돌봄서비스무료지원사업	협의완료	
774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의완료	
775		○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776		○		소원을 말해봐	협의완료	
777		○		치매환자 돌봄이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778		○		치매환자 돌봄 비용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779		○		치매환자 도우미 지원	협의완료	
780		○		결혼이민자 홍역 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무료지원	협의완료	
781		○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협의완료	
782			○	노인 목욕권 지급 사업	협의완료	
783		○		무료간병 온(ON)종일 서비스	협의완료	
784		무주군	○		반딧불 농특산을 청년 나르샤 프로젝트	협의완료
785			○		청년 키움 아카데미 프로젝트 사업	협의완료
786	○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협의완료	
787	○			혈액투석환자 이송(교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788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789	○			한식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재협의 후 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790	부안군		○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협약완료
791		○		생동하는 부안청년 창업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792		○		일취월장 청년전문인 양성 사업	협약완료
793	순창군	○		권역 및 체험휴양마을 광역사무장 지원사업	협약완료
794		○		발효 미생물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협약완료
795		○		건강지유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완료
796		○		청년 귀농귀촌인 창업 보육 지원사업	협약완료
797		○		고용실태 빅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협약완료
798		○		순창군 특화작목 재배 교육을 통한 영농인력 양성사업	협약완료
799		○		지역문화 전문인력 배치 지원사업	반려
800			○	화장장려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801	완주군	○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802		○		노인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원사업	협약완료
803	익산시	○		중소기업인력양성지원사업	협약완료
804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인력양성사업	협약완료
805		○		주얼리기업 인력양성 지원사업	협약완료
806		○		농식품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사업	협약완료
807		○		생활체육인턴강사 지원사업	협약완료
808		○		축제·행사 기획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완료
809		○		청년주얼리 전문인력 지원사업	반려
810		○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	협약완료
811		○		문화관광 콘텐츠 청년인력 양성	협약완료
812		○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	협약완료
813		○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814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815		○		자체돌봄사업(언제든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협약완료
816		○		출생아(첫째, 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협약완료
817		○		결혼이민자 국제운송비 지원	재협약 후 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18	익산시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협의완료	
819		○		어르신 건강증진 청결비(목욕비) 지원	협의완료	
820	임실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	협의완료	
821		○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사업	협의완료	
822		○		지역문화원 청년 인력 지원사업	협의완료	
823			○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824	장수군	○		농업법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825		○		장수융복합가공지원센터운영	협의완료	
826		○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협의완료	
827		○		취업정보센터일자리담당관육성	협의완료	
828		○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	협의완료	
829		○		학자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830		○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831		○		군민건강을 위한 예방접종비 감면	재협의 후 완료	
83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833		○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감면	협의완료	
834		○		국적취득차지원사업	협의완료	
835			○		65세이상노인 및 다문화가족 진료비(외래·응급실) 본인부담금 지원	협의완료
836		전라북도 (본청)	○		전북 MICE산업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	협의완료
837			○		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	협의완료
838	○			장애인하이패스단말기지원사업	협의완료	
839	○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협의완료	
840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협의완료(조건부)	
841	전주시	○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배치 운영	반려	
842		○		전주푸드 청년활동가 양성	반려	
843		○		전주시 바이전주우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의완료	
844		○		천만그루 가든시티 전주프로젝트 지원인력채용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845	전라북도	○		지역 ICT기업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협약완료			
846				청년창업공간활성화'홍부'추진	협약완료			
847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848				주거복지 청년전문가 일자리 양성사업	협약완료			
849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특화 청년 행복잡(JOB)기	협약완료			
850				축재전문인력 양성사업	협약완료			
851				지역영화영상산업 전문인력양성-영상산업기획 및 홍보	협약완료			
852				청년공연기획 전문가 양성사업	협약완료			
853				생활문화 매개자 양성 및 배치 청년문화동장	협약완료			
854				도시재생뉴딜활동가양성교육	협약완료			
855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전문인력 지원사업	협약완료			
856				장애인일자리카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완료			
857				장애인 돌봄프로그램 운영사업	협약완료			
858				지역이야기기술사(콘텐츠기획·홍보인력) 양성	협약완료			
859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제도	협약완료			
860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	협약완료			
861				한식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협약완료			
862				청년문화향유카드 지원사업	협약완료			
863				정읍시	○		농업법인 청년인력채용 지원사업	협약완료
864							바이오매스 전문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협약완료
865							바이오가스 플랜트 운영	협약완료
866							청년 로컬사업단 육성	반려
867							백연권역 공동체 활동지원 및 운영	협약완료
868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사업	협약완료
869							창업챌린지샵 청년매니저 양성	협약완료
870							정읍 쌍화차거리 청년창업물 "쌍화점" 조성	반려
871							어르신 건강관리단 운영사업	협약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872	전라북도	정읍시	○	청년보부상(마케팅)	협의완료	
873			○	성인문해청년올림'햇불'	협의완료	
874			○	마을재생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협의완료	
875			○	지역공동체 코디네이터 운영	협의완료	
876			○	내장상동 및 황토권역 공동체 활동지원 및 운영	협의완료	
877			○	정읍향토문화자원 전수조사	협의완료	
878			○	청년문화 예술활동가 양성	협의완료	
879			○	의료지원 전담반 운영	협의완료	
880			○	생명지킴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	협의완료	
881			○	청년층 산림분야 전문인력 육성	협의완료	
882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협의완료	
883			○	방과 후 교육 지원 사업	협의완료	
884			진안군	○	독거노인 119 비상전화기 보급	협의완료
885				○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협의완료
886				○	저소득층가구 청소·소독사업	협의완료
887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888	○	중·고 졸업한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진안군고향사랑장학금제도)		협의완료		
8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30%) 지원	협의완료	
890			○	청년수당(자기개발비) 지원	협의완료	
891			○	제주 더 큰 인재 맞춤 훈련수당	협의완료	
892			○	일자리창출 소규모 기업(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협의완료	
893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지원	협의완료	
894			○	신장장애인 혈액투석, 이식수술 사전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협의완료	
895			○	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협의완료	
896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생 카드발급 학습비 지원사업	협의완료	
897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지원	재협의 후 완료	
898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899	계룡시		○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제도변경	협약완료
900	공주시	○		효행장려지원사업 관내효가정에대한효행장려수당지급	협약완료
901	금산군	○		시험·검사기관 운영 지원사업	협약완료
902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협약완료
903	금산군	○		70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접종	협약완료
904	논산시	○		논산시 청년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반려
905			○	논산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사업	협약완료
906	당진시	○		청년 기회로 프로젝트	협약완료
907		○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협약완료
908		○		다자녀가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협약완료
909			○	청년 생활임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910	보령시	○		3자녀이상 가정 양육지원 바우처 카드 발급	협약완료
911		○		3자녀이상 가정 학습용품지원 바우처 카드 발급	협약완료
912		○		임신부 출산용품 준비 바우처 지원	협약완료
913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협약완료
914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915		○		우수중소·농업분야기업일자리사업	협약완료
916	부여군	○		백제역사문화 담은 푸드트럭 창업지원	협약완료
917		○		공공주차장 관리운영사업	협약완료
918		○		청년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사업	협약완료
919		○		장애청년 중증장애인 도움사업	협약완료
92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협약완료
921		○		농민수당 지원	협약완료 (조건부)
922	서산시	○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	협약완료
923		○		청소년 전용 카페 운영	협약완료
924		○		“서산의 골목 무화 탐방” 발간	협약완료
925		○		장애인 운동재활 및 특수체육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926	서천군	○		산후건강관리비지원사업	협의완료
927		○		임산부분만비지원사업	협의완료
928		○		청년 직장인 주거비 지원 사업	협의완료
929	아산시	○		상하수도요금 지원(감면)	협의완료
930	예산군	○		다자녀가구 전·월세보증금등 지원	협의완료
931		○		결혼장려금 지원	재협의 후 완료
932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대상자확대)	협의완료
933			○	만70세이상노인 목욕비 및 이마용비 지원	협의완료
934	천안시	○		경로당 친환경잡쌀 지원	반려
935			○	출생축하금 확대 지원	협의완료
936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협의완료
937	충청남도		○	인구정책사업	협의완료
938		청양군		○	넷째이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지원
939	충청남도 (본청)	○		청년 전·월세보증금 용자지원	협의완료
940		○		지역사회 청년 쉼어하우스 운영	협의완료
941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협의완료
942		○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항공료 지원	협의완료
943		○		더 행복한 주택(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협의완료
944		○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협의완료
945		○		청년일자리코디네이터과건	협의완료
946			○	행복키움수당(전, 충남아기수당) 지원	협의완료
947	태안군	○		태안군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협의완료
948	괴산군	○		희망을 이루는 청년 지원사업	협의완료
949				괴산군 일자리지원단 운영	협의완료
950	충청북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청년사무자채용사업	협의완료
951		○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	협의완료
952		○		단양고추 가공 및 유통판매 활성화 사업	협의완료
953		○		지역청년관광전문가양성	협의완료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약결과	
954	충청북도	○		지역자원 축제코디네이터 기획사업	협약완료	
95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지원	협약완료	
956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사업	협약완료	
957		영동군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협약완료	
958			○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협약완료	
959			○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960		옥천군	○	결혼정착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961			○	농어촌버스요금체계개선을통한 노인등대중교통이용활성화지원사업	협약완료	
962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협약완료
963				○	출산축하금및축하용품(상품권)지원	협약완료
964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협약완료
				○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협약완료
965		음성군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협약완료
966		제천시		○	다자녀 가정 학자금 및 교복비 지원	협약완료
967				○	출산지원금	협약완료
968		증평군	○		지역문화 코디네이터 육성사업	협약완료
969		진천군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재협약 후 완료
970			○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971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972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협약완료
973				○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협약완료
974	청주시	○		청주시 청년 창업기업 프로젝트	협약완료	
975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협약완료	
976		○		저소득층 노인 한방건강지원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977		○		임산부 배려 청주시 핑크카드 운영 사업	재협약 후 완료 (사업미추진)	

연번	협요청기관		신설	변경	제도(사업명)	협의결과	
978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지역인재키움사업	협의완료	
979			○		충주 바이오GMP 양성과정 운영	협의완료	
980			○		충주 생산 품질 전문가 양성과정	협의완료	
981			○		충북(충주)청년관광코디네이터운영	협의완료	
982			○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협의완료	
983		충청북도 (본청)	○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반려	
984			○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반려	
985			○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협의완료	
986			○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협의완료	
987			○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사업	협의완료	
988			○		지역 혁신창업 크리에이더 인큐베이팅	협의완료	
989			○		LP가스지킴이 인력양성 지원사업	협의완료	
990			○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의약 치료비 지원	재협의 후 완료 (사업미추진)	
991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정부지원형 추가)	협의완료

【부록 2】

중양부처 사회보장사업 목록(2019.12.31.기준)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안전지킴이
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
3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임금피크제지원금
4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
6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취약계층취업지원 사업
7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8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제도
9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사회보험료 지원)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13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14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15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복지지원(장학금)
16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업훈련
17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18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산재근로자합병증 등 예방관리
1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요양급여(보조기) 산재보험급여
20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진폐근로자보호
2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22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23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24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2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청년구직촉진수당 지원 사업
26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27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용자·지원
2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30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3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32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표준사업장설립지원
33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지원금
34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5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이지원
3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생활안정자금대부
3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임금체불생계비대부
38	교육부	대학장학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39	교육부	대학장학과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
40	교육부	대학장학과	인문100년 장학금
41	교육부	대학장학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42	교육부	대학장학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43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4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4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46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47	교육부	이러닝과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48	교육부	교육정보화과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지원
49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50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
51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WEE 클래스 상담지원
5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급식비
53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54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고교 학비 지원
55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56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57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지원
58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탈북학생 교육지원
59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60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61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복권기금 저소득층 장학사업
6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63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64	국가보훈처	공훈심사과	영주귀국정착금
65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독립유공자등)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66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손자녀가계지원비
67	국가보훈처	나라사랑정책과	애국지사특별예우금
68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환자2세 수당
70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고엽제후유의증수당
71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7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73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무공영예수당
74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보상금
75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사망일시금
76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참전명예수당
77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78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79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80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보훈병원진료
81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위탁병원진료
82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83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양로지원
84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85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민영교통시설이용(버스,내항여객선,KTX등)
86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87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재해위로금지급
88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89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90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 지원
9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92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대부지원
93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국가유공자등 취업지원
94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고엽제특별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95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96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재해보상금
97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98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9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 대부지원
100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전직지원금
10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풍수해보험료 지원
102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103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공공주택공급(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104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국민임대주택공급
105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기존주택전세임대
106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그린홈)
107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108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영구임대주택공급
109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장기전세주택공급
110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1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준주택지원(용자)
11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113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14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115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주거환경개선자금
116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정책과	행복주택 공급
117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
11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버팀목대출보증
11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1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121	금융위원회	은행과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
122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근로자햇살론 보증사업)
12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감면(34종)
124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근로장려금
12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12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127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2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취약농가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가사도우미) 지원)
129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농업인안전보험
13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13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학교우유급식
132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식품 바우처지원 시범사업
13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식품 행복 꾸러미 지원 사업
134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1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여가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136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장애인문화·예술 지원
137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창작준비금 지원
13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운영
139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14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14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고령 친화 도서관 조성
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1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온라인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장애인 정보화교육
14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웹정보접근성제고
1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1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14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148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149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5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만40세, 만66세)
15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만 6세미만 영유아건강검진
15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15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154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시범사업
155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5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15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노후준비서비스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5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교육지원
15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60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16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162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의료지원
163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16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주거지원
165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16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167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장제급여
168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해산급여
16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초연금
17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노인의치보철(보건소 의치(틀니)사업)
17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요양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선택병의원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장애인보장구 지원	
17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173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74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17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176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77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178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7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0	보건복지부	만성질환관리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18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82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방과후보육료지원
183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만0-5세 보육료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다문화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장애아보육료지원
18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시간제보육
185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186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187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18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89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9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의사상자 지원
192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193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19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사업
19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196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197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9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19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200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20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만기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202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가정위탁양육지원(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등)
20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2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지급
20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경제선 아동 자립지원, 주거 지원통합서비스)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0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07	보건복지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입원격리치료명령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208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할린한인지원
210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21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급여
212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가급여
2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21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215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노숙인등 복지지원
216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양곡할인
217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218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219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
220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중도시각장애인재활훈련지원
22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척수장애인재활훈련지원
222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지원사업 통합 운영
22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지원
22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재활서비스
22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교육지원
22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22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
229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장애인활동지원
23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일반형 일자리 지원
23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수당
232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아동수당
233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제공
23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보조기구교부
235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236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
23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의료비지원
238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3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훈련수당)
240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직업전환지원
24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42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건강검진사업
24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24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지원 사업
245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246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247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검진사업
248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암환자의료비지원
249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폭피해자지원
250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재가암관리
25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지원
25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25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25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25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56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57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258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59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0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산림서비스도우미
261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262	산림청	산림자원과	공공산림가꾸기
263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산림보호지원단
264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공공(임대)주택신재생에너지지원 (구 보급자리주택신재생보급)
26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266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서민층가스시설개선
267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에너지바우처
26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고효율보일러교체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26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270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미혼모·부 초기지원
27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272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아이돌봄 서비스
273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74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지원
275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76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77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27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7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지원
28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28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8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28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84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285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286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287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288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28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290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매체활용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 (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29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청소년유해환경개선
292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29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29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지원
295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296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297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특별지원
298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
29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0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관로과	여성기업관로지원

연번	부처	소관부서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관로과	여성창업지원
30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용자)
30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창업지원
30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저소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영업장소 제공
304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서비스창업과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305	통일부	이산가족과	납북피해자 지원
306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307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
308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
309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310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의료지원
311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312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정착금 지원
313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주택알선 지원
314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315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316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
317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가사도우미
318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도서관 여객선 운임지원
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감면(지방세, 주민세, 취득세 및 자동차세)
320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321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22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석면피해구제급여
323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 사업
32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건강보호종합대책 지원사업

【부록 3】

사회보장제도 협의 총괄부서 지정 현황(시·도)

연번	시도명	부서명
1	강원도	복지정책과
2	경기도	복지정책과
3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4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5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6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
7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8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9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10	세종특별자치시	복지정책과
11	울산광역시	복지인구정책과
12	인천광역시	복지정책과
13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14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1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16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1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시도별 배열 순서는 가나다 順

【부록 4】

그 간('13-'17년) 주요 부동의 유형 및 사례

01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재정에 부정적 효과 초래

01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요청내용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협약결과 과잉이용 유도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우려로 부동의

02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요청내용 영·유아, 노인, 여성농업인 등에 대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협약결과 과잉의료이용 유도 및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로 부동의

03 민간보험료 지원

- 요청내용 1세 이하 셋째아 대상 1인당 월 3만원 이내 보험료 지원
- 협약결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켜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동의

02 사회보장급여 또는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 유발

01 장수수당

- 요청내용 고령 노인에게 정기적인 현금 지급
- 협약결과 소득에 상관없는 정기적 현금지급은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부동의

02 노인 교통비 지원

- 요청내용 여가·관광, 운송수단 이용비용 보전을 위한 정액 지원
- 협약결과 국가사업인 기초연금과 유사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로서 부동의

03 교육경비 이중 지원

- 요청내용 관내 초중고 학생에게 동일항목의 교육비(급식비, 교복비 등) 지원
- 협약결과 동일 지역 내 교육청에서 기 시행 중인 경우 지자체 이중 지원 부동의

03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과 배치되는 등 사업의 타당성 결여

01 사설 학원비 지원

요청내용 초·중고 학생 등에게 사설 학원비 및 교재비 지원

협의결과 입시목적의 주요 교과목 선행학습 등이 이루어지는 사설 학원에 대한 공공재원의 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부정책방향(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근절)을 고려하여 공교육 체계 내 타 교육지원사업으로 전환 권고

02 민간산후조리비용 지원

요청내용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지원

협의결과 산모의 선택권 제한, 민간시장의 가격 왜곡 등의 우려가 있는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공공재원투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기존정책 활용 권고

03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요청내용 출산 산모에게 한방첩약 지원

협의결과 산후조리 목적 한약지원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는 등 공공재원투입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등 기존정책 활용 권고

04 그 외 관련법령 등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부록 5】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신설)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신설] 청년구직활동지원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_회)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청년)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예:건강보험 092)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횟수	총 _ 1 _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복지 재원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100 %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_ %
지원규모		총 5,000 명/가구/개소/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제도(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예정일/협의를요청일		2017년 ○월(예정) / 2017년 ○월 ※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제도 신설 필요성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의 심화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면서 구직활동을 전제로 정책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 필요
관련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 청년지원 조례 제2조
사업목적		일정소득 이하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경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성과지표		취업률
지원 대상	선정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구직활동 중인 미취업 청년 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 ③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 학생 등 일부참여제한 - 구직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서류 미비자는 선정 제외
	대상규모	5,000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카드 발행을 통한 사후 지원
	지원수준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사후 지급 (최대 300만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공고→신청→심사→대상자선정→카드발급→현금지원*→사례관리 * 매월 활동계획 및 결과에 기초하여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
	수행기관	○○○○재단
소요 자원	총규모	165억 원 (지원금 150억, 시스템개발비 5억, 운영비 10억)
	재원별 규모	도비 100%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 고용보험 가입기간, 자격정보, 유사 급여(취업성공패키지 등) 수혜 이력(지급실적) 등
	연계 방안	위크넷, 일모아시스템 등을 활용한 공적정보 조회

2.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신설의 필요성

□ 청년층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 예상

- '16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3.7%인 반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8%에 달함. 청년층 고용률도 '04년 45.2%, '15년 42.3%로 지속적으로 하락
 - 치열한 취업난으로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면서 청년층의 비노동력화·유휴화·일자리 불안정성이 심화
- '9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에코)*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시기임에 따라 청년들 고용상황은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전망

※ '90년대 초반에 신생아(에코세대)가 매년 70만 명 이상씩 태어남

구분	전국 실업률 (% , %p)				○○○ 실업률 (% , %p)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전연령	청년 (15-29세)	중장년 (30-59세)	노년 (60세이상)
2000(A)	4.4	8.1	3.5	1.5	3.9	6.2	3.2	2.6
2016(B)	3.7	9.8	2.5	2.7	3.9	9.7	2.6	3.3
증감(B-A)	△0.7	1.7	△1.0	1.2	0.0	3.5	△0.6	0.7

□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구직활동 제한, 취업준비기간 장기화

- 최근까지 청년층은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음
 - 하지만,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생계비 마련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정)
 - 취업준비를 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취업실패반복·노동시장진입지연 등 악순환 반복

□ 청년취업 문제는 저소득 청년만이 아닌 청년 쏠 계층의 문제

- 청년취업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견 제기

- 부모의 지원이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지 저소득 뿐만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청년층에게 혜택*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구분	정책 우선순위
저소득 미취업자	1위(50.1%)	졸업유예자	4위(25.6%)	예비창업자	7위(9.2%)
장기 미취업자	2위(31.8%)	여성 미취업자	5위(16.8%)	구직단념자	8위(7.6%)
모든 청년	3위(28.6%)	무연고 청년	6위(11.6%)	니트족	9위(6.2%)

- 청년들은 현재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가장 큰 곤란을 겪고 있으며 취업지원·
일자리 정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모든 청년”을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도내 청년들의 40% 내외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청년
22%는 부채(평균2,657만원) 보유

※ 부채원인 : 교육비·주거비·생활비 順

알바	주거· 생활비	등록금 등	여행·취미	사회경험	저축·목돈	취·창업 스펙	어학연수
비율	45.4%	16%	15.3%	9%	7.8%	5.3%	1.2%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③ 지역의 특수성

- 전국 최대(1/4) 청년인구 거주, 道內 청년층 체감 고용불안정은 전국 최고

- '16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청년(18-34세) 인구(1,158.7만명) 대비 ○○
청년 인구(291.3만명)는 전국의 25.3%를 차지하며 최대 규모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행정 구역	청년 인구 (명)	청년인구비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지역 인구 중	전국 청년 중
전국	13,365,227	25.8%	100%	○○	865,611	24.8%	6.5%
○○	3,376,584	26.5%	25.3%	○○	815,075	24.2%	6.1%
○○	2,776,839	28.0%	20.8%	○○	790,801	26.9%	5.9%

- 지난 15년('00년-'16년) 간 전국 대비 ○○ 청년층의 고용률 및 실업률의 증감 폭이 2배 이상으로 크게 변화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체감도가 심각한 상황
 - 전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1.1%p 하락, 반면 ○○ 청년층은 2.4%p 하락
 - 전국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7%p 상승, 반면 ○○ 청년층은 3.6%p 상승
- '16년 ○○○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도내 청년층(15-29세)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55.6%로 관내 평균(37.0%) 대비 가장 높고 전국 평균(33.3%) 보다 높음
 - 또한, ○○○는 제조업 등 직종의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이 높아 인력수급의 불일치가 심각하며 구직기간도 길어 장기 실업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지역적 특수성으로 도내 청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부담 가중

- 도내 청년들은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장거리 이동(서울 등 외곽)으로 교통비 부담이 크며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청년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여가시간의 부족(33.6%), 높은 피로도(32.7%), 과도한 교통비 지출(20.4%)(월 평균 교통비 11만5천원) 등의 상실감 호소

□ 전국 대비 높은 청년 니트족 규모

- ○○○는 전체 인구의 30%이상을 20-30대가 차지할 정도로 청년비중이 높음
 - 도는 '청년 니트족' 규모(27만6천명)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니트족'(20만1천명)은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고 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를 비롯하여 구직활동이 소극적인 니트족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을 확대해 나갈 필요 있음

3.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

- (서비스 특화) 취성패는 다양한 청년층을 포괄하고 있으며 참여자 유형을 취성패 I(기초수급자·저소득층), 취성패 II(청년·중장년)으로 분류 구분함
 - 그러나, 참여자의 취업역량 등급에 따른 유형별 서비스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층에 비해 청년층의 취업 성과가 낮게 나타남

- (직업훈련) 청년층은 기초수급자에 비해 취업역량이 높아 **직업훈련 참여율*이 낮고** 취업지원경로를 살펴보면 ‘1-3단계형’의 취업률(81.6%)**이 높음
 - 또한, 직업훈련 실시 이후 **직업훈련과 취업 직종과의 일치여부**를 살펴보면 일치가 17.75%·불일치가 82.25%로 대부분이 **훈련과 다른 직종에 취업**
- (취업알선) 청년층은 기초수급자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구직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취업패를 훈련지원의 수단으로만 활용할 경우 ‘통합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의 정책 성과를 달성하기 곤란

<타 유사사업과 비교>

구분	청년활동지원사업 (서울)	청년배당 (경기 성남)	청년사회진출사업 (인천)	행복나눔청년취업희망카드 (대전)
목적	▶ 사회활동 지원	▶ 기본소득 보장	▶ 면접활동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년 이상 거주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 3년 이상 거주 ▶ 만24세 청년	▶ 취업패 I, II 유형 참여 중인 청년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150%이하
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 연간 100만원 (분기별25만원) ▶ 지역상품권	▶ 취업패 I : 60만원 (월20만원씩3개월) ▶ 취업패 II : 20만원	▶ 총180만원 (온라인포인트&체크)
예산	▶ ('17년) 150억	▶ ('17년) 113억	▶ ('17년) 30억	▶ ('17년) 108억

구분	청년교통비지원사업 (경기 수원)	희망이음프로젝트 (충남)	청년복지카드 (경북)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목적	▶ 면접활동 지원	▶ 면접활동 지원	▶ 안정적 생활비 지원	▶ 구직활동 지원
대상	▶ 19~34세 미취업 ▶ 중위소득60%이하	▶ 취업패 3단계 참여중인 청년	▶ 도내15~39세 근로자 (근로자 3~99명 이하 중소기업) (연봉 3천만원 이하)	▶ 1년 이상 거주 ▶ 18~34세 미취업 ▶ 중위소득80%이하
지원	▶ 총18만원 (월3만원씩 6개월) ▶ 1,200명	▶ 1인당 5만원(1회) (포인트&체크) ▶ 500명	▶ 1인당 연간 100만원 (50만원씩 2회 지급) (선불카드지원)	▶ 총300만원 (월50만원씩6개월) (카드형태사후지원)
예산	▶ ('17년) 2억1600만원	▶ ('17년) 5천만원	▶ ('17년) 20억	▶ ('17년) 165억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정부정책 사각지대 해소) 취성패 미참여자 발굴

- (사업취지) 정부의 고용보험과 취성패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한 현금을 지원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성패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 청년층 중에서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 <OECD 청년행동계획 우선 지원대상(14년)> : 청년니트, 신규졸업자, 일자리 미스매치에 직면한 대학 졸업자
- (기본방향) 구직활동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구직 활동을 전제로 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설계
 - ○○○의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의존을 야기하지 않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 (지원대상) 청년층에 대한 포괄지원이 아니라 ①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중 ②취성패 사각지대에 있는 ③구직의지가 높은 근로능력자를 선발
 - 고용보험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라고 해서 반드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 <사업 참여 제외>

-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단, 고등학교·대학교(최종 학기)·방통대·야간 대학원생 참여 가능)
-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③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통계청 “시간제 근로자” 정의 :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④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

<2017년도 중위소득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중위150%(B)	2,479,397	4,221,674	5,461,373	6,701,070	7,940,768	9,180,467
보험료 (B*0.0306)	75,870	129,183	167,118	205,053	242,987	280,922

- ※ 중위소득(A)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17년 기준 중위소득 심의·의결('16.7.22.)
- ※ 0.0306 : '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요율
- ※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은 중위소득 60%×0.0306적용(직장·지역가입자 동일 적용)

□ 지원내용

- 월 50만원,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월50만원 지원 금액 산출근거>

- ① '○○○청년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17.1월) : 청년들이 구직활동 시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44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 ② 서울연구원 「청년정책 연구조사」('16년) 결과 : 청년들의 생활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매월 약58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응답
- ③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방안」('13.11월) : 구직지원 참여수당은 전체 임금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평균임금('11년 월2,032천원)의 20%, 최저임금('11년 월903천원)의 44% 수준인 월40만원 정도를 시행 첫해('11년)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며, 매년 임금인상률을 평균 5%로 가정하여 참여수당을 인상 조정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원)	394,000	413,700	434,385	456,104	478,909	502,855	527,998

□ 지원방법

- '○○○' 카드 발급, 현금지원이 아닌 카드형태로 사후 지원

※ 참여자의 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해 사후에 보완적으로 온라인 검증 및 정산 실시

4.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전혀 없으며, ○○○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부담은 크지 않음
- 본 사업에 따른 자원확보를 위해 도내 다른 제도의 ‘예산변경사항 없음’
- 타 사회보장제도의 시행과 국고사업 지방비 매칭 등에 ‘부정적 영향 없음’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55.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5.2	13,958,263	7,704,726	6,253,537	0	0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의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57.2%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2	13,958,263	7,986,387	5,971,876	0	0

※ 자주재원 :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 사회보장예산

- 2016년도 ○○○○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액 비율은 34.4%임

< ○○○○ 재정 여건 진단 >

연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예산
2016년도	55.2%	57.20%	34.4%
2015년도	53.6%	55.00%	34.7%
2014년도	53.7%	56.00%	32.3%
2013년도	60.10%	62.20%	31.7%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지원체계) ○○○○ 및 ○○○○재단 등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
 - ○○○○ : 총괄운영·관리, ○○○○재단 지도·감독,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재단 : 온라인 플랫폼 개발·운영,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사업운영, 현장연계·협력 등

방침수립	⇒	참가자 모집	⇒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17.7월)		○○○○○재단 (’17.9월)		선정심사위원회 (’17.9-10월)		재단·금융기관 (’17.9월 이후)

- (서비스 전달체계) 온라인 신청 접수, 서류심사, 오디션 실시, 지원금 지급 등 고용서비스 일체를 ○○○○○○재단에서 원스톱으로 진행

온라인 신청	→	자격심사 (적격여부)	→	서류심사 (정성평가)	→	구직지원금 지급	→	원스톱 고용서비스
▶ 도내1년 이상 거주 만18~34세 ▶ 신청서/증빙서류 접수		▶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각종 시스템 조회		▶ 구직활동 계획서 등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구직활동계획서를 토대로 개인별 구직활동범위 인정 ▶ 월50만원×6개월 (최대 300만원)		▶ 고용지원 플랫폼 연계, 온라인 상담 ▶ 사례관리, 취업역량강화
재단		재단		재단		재단		재단

- (사례관리) 전담 상담사가 온라인(고용지원플랫폼) 및 오프라인에서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구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예산 (억)	185	45	70	70
지원인원 (명)	5,000	1,000	2,000	2,000

※ 2017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 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 ○○○○ 100% 예산으로 조달 (’17년 일반회계 165억원)
- 정책의 지속가능성 : 기 사업은 민선6기 대표적인 ○○합의과제이며, 전액 ○○비 100%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도임

【부록 6】 협의요청서 작성 예시(변경)

※ 협의요청서 작성 방법의 이해를 돕고자, 지자체 사업 중 일부내용을 수정·편집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작성 이해 목적 외 사용금지**(예, 동일내용의 사업을 그대로 작성하여 사업 요청 등)
 * 연도별 협의요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협의요청 시 당해연도 양식 사용 필수

(변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시 추가지원(예외지원확대)

1. 제도(사업) 현황 체크리스트 ※해당되는 항목에 표기

구 분	주요 내용	
작성자	○○부/○○시도(○○시군구) ○○○과 성명 ○○○ 연락처:	
신설/변경여부	<input type="checkbox"/> 신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변경 (변경이력 : <u>1</u> 회)	
근거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자치법규 <input type="checkbox"/> 시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등(사회보장기본(지역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중기재정계획 등)	
사업 유형	목적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요양돌봄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건강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고용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생계 <input type="checkbox"/> 재해보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자별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노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보훈대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여성가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산재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예산기준별	<input type="checkbox"/> 복지(080) (세부항목/코드:) (예:보훈 087)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090) (세부항목/코드: 보건의료 091) (예:건강보험 092)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항목/코드:)
급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자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득 <input type="checkbox"/> 재산 <input type="checkbox"/> 자산 <input type="checkbox"/> 인적(연령/성별 포함)
	유형	<input type="checkbox"/> 현금 <input type="checkbox"/> 현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바우처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기	<input type="checkbox"/> 일주일 <input type="checkbox"/> 월간 <input type="checkbox"/> 분기 <input type="checkbox"/> 반기 <input type="checkbox"/> 수시 <input type="checkbox"/> 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회성 (출산 시)
	횟수	총 <u>1</u> 회
전달 체계	신청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조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결정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지급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후관리	<input type="checkbox"/> 읍면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광역시도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 및 학교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민간기관 <input type="checkbox"/> 신청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정보원)
재원	주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u>100</u> %
	부 소요재원	<input type="checkbox"/> 국비 <input type="checkbox"/> 시도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민간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율 <u> </u> %
지원규모	총 <u>3,399</u> 명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활용 <input type="checkbox"/> 비활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연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격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처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제도(사업) 변경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변경예정일		2018.01.01.(협의요청일 2017.10)			
제도 변경사유		정부에서 시행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 대상 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가구가 적어 이를 보완하고자 ○○○는 2017년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지원 확대, 이후 점진적인 대상범위 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지원하고자 함			
관련규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목적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성과지표		산모 및 신생아 건강영향지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이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이후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 ※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대상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6,795명	6,779명	6,846명
지원 내용	지원유형	이전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후	변동없음		
	지원수준	이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의 정부지원금 중 출산순위가 둘째자녀 이상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다형” 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17년 기준 최소 501,000원~최대 1,418,000원)		
		이후	상동 ('17년 기준 최소 278,000원~최대 1,418,000원)		
전달 체계	지원절차	이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 예약(보건소) →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 → 접수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보건소)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계약본인부담금 납부(신청인) → 서비스 실시(제공기관) → 서비스 비용 지급(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수행기관	이전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이후	변동없음		
소요 재원	총규모	이전	2015년	2016년	2017년
			-	-	1,212,173천원
		이후 (변경 후 3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72,966천원	1,997,266천원
재원별 규모	이전	시비100%			
	이후	변동없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활용	필요 정보	인적 정보, 가구원 정보, 건강보험 자격정보, 건강보험 납부금액, ○○○ 전입일			
	연계 방안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연계			

3. 사업의 타당성

① 제도(사업) 변경 필요성

● 비싼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

- 2016년 12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은 234만원(우리시 258만원)으로 출산가정에 큰 부담이지만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
-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은 산모·신생아 집단관리로 인한 감염 및 안전위험 등의 위험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고자 함.

●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 서비스 확대 필요

- 기혼 여성(20~44세)을 대상으로 출산정책 욕구도 조사 결과 **출산지원 분야의 최우선 정책은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69.7%로 매우 높음.**(’12.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산지원 정책욕구도 조사결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원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 65%이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가구가 적어 **기존 제도로는 출산지원 욕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미**
- 정책욕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기준 금액이 낮아 지원율¹⁾이 ’15년 9.7%, ’16년 13.6%에 불과, **정책 욕구도 충족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 전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동 사업 반영

1)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text{출생아수}} \times 100$, (’15년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 1,136명}}{\text{출생아수 8,364명}} \times 100$, ’16년 지원율 = $\frac{\text{지원자수 898명}}{\text{출생아수 9,296명}} \times 100$)

③ 지역의 특수성

- ○○○는 빠른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도·농복합도시로 ○○○ ○○개 시·군 가운데 출생아수가 세 번째로 많고('16년 기준 8,288명), 가임기여성(20~44세)의 수가 네 번째로 많아('16년 186,008명)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
- ○○○는 ○○○ 면적의 79%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이지만 ○개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으며,(○○시 전체인구의 23.4%) 하루 평균 5.2명이 출생하는데 반해 산후조리원은 3개소(53객실)로 매우 부족한 상황.
- ○○○는 하루 평균 8.6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총 7개의 산후조리원(총 129객실)이 있음. 3개구 가운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율이 8.7%(2016년 기준)로 매우 낮음.
- '16년 12월말 기준 ○○○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일반실 2주 기준, 단태아) 259만원으로 ○○○ 00개 시·군·구 가운데 4번째로 비싸고(1위 ○○시, 2위 ○○시, 3위 ○○시), 전국 130개 시·군·구 가운데 27번째로 많다.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16. 12월 기준))
- ○○○는 2017년부터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지원 하였는데, 지원율이 전년대비 12.7% 상승, 또한 소득기준이 점차 완화²⁾될수록 지원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서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 산후조리원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해 이용비용이 높고, 화재발생 및 신생아 집단감염 등 여러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가계의 경제비용을 분담하고,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조정('15~'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지원율: 9.7%)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율: 13.6%)	'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8월말 지원율 26.3%)

4.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 서비스 등 관련제도 분석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와 급여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해당 **급여·서비스를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접수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 차단 및 유사서비스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유사서비스 포기 동의서”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형식으로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의 조산 혹은 출산 전후에 필요한 해산비를 지원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예정)후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이혼한 부모에게 출산 전·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려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사업

②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에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돕는 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최소 39%~최대 88%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출산지원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며,
- ○○○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출산가정에도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의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비용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의 목적

③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 등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자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기준중위소득80%를 초과하는 모든 출산가정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구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구분	출산순위	지 원 금 (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급여수준	단태아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단태아	첫째아	278,000 (5일)	464,000 (10일)	591,000 (15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둘째아	501,000 (10일)	626,000 (15일)	709,000 (20일)
	쌍태아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셋째아 이상	751,000 (15일)	834,000 (20일)	886,000 (25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둘째아	679,000 (10일)	848,000 (15일)	961,000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셋째아 이상	916,000 (15일)	1,018,000 (20일)	1,081,000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1,126,000 (15일)	1,251,000 (20일)	1,418,000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가격 중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자 지원금에 따름.

-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표준서비스, 1주 5일, 1일 9시간 제공(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변동없음)
- 급여 유형 :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변동없음)
- 조사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산모의 ○○○ 전입일 확인 (변동없음)

● 향후 5년간 대상자 규모

- ○○○ 5년간 장래인구추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인구수	975,746	991,126	1,006,588	1,017,962	1,028,752	1,038,731	1,046,522	1,053,743	
출생아수 합계	9,296	8,364	8,153	8,042	8,024	8,102	8,163	8,114	
단태아	소 계	8,964	8,065	7,862	7,754	7,737	7,812	7,871	7,824
	첫째자녀	4,507	4,055	3,953	3,899	3,890	3,928	3,958	3,934
	둘째자녀	3,629	3,265	3,183	3,139	3,132	3,163	3,186	3,167
	셋째자녀 이상	791	711	694	684	683	689	694	690
	미상	37	34	32	32	32	32	33	33
쌍생아(쌍태아)	소 계	161	145	141	140	139	141	142	141
	둘째자녀	115	104	101	100	100	101	102	101
	셋째자녀 이상	46	41	40	40	39	40	40	40
삼태아이상(쌍)	3	3	3	3	3	3	3	3	

- 인구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 주요인구지표(중위 추계) 중 ○○○ 인구성장율(%) 적용 ('17년 1.56%, '18년 1.13%, '19년 1.06%, '20년 0.97%, '21년 0.75%, '22년 0.69%)
- 출생아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2016), 시나리오별 인구변동요인(출산율 현수준 추계) 중 출생율(인구천명당) 적용 ('17년 8.1, '18년 7.9, '19년 7.8, '20년 7.8, '21년 7.8, '22년 7.7)
- 단태아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순위별 출생 중 2016년 ○○○ 출산순위별 비율 적용 (첫째자녀 50.3%, 둘째자녀 40.5%, 셋째자녀 이상 8.8%, 미상 0.4%)
- 쌍생아 출생아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쌍태아 및 월별 출생 중 '15년 ○○○ 출생아수 대비 쌍생아 비율 3.47% 적용
- 쌍생아 출산순위별 비율 : ○○○ 2017년 7월말 기준, 바우처 신청자 중 쌍생아의 출산순위 비율 적용(둘째자녀 71.69%, 셋째자녀 이상 28.3%)

- 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지원) 대상자 규모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출생아수	국비지원	예외지원	
대상자수	7,865	1,070	6,795	7,847	1,068	6,779	7,924	1,078	6,846	7,983	1,085	6,898	7,935	1,080	6,855	
단태아	소계	7,722	1,050	6,672	7,705	1,048	6,657	7,780	1,058	6,722	7,838	1,065	6,773	7,791	1,060	6,731
	첫째자녀	3,899	530	3,369	3,890	529	3,361	3,928	534	3,394	3,958	538	3,420	3,934	535	3,399
	둘째자녀	3,139	427	2,712	3,132	426	2,706	3,163	430	2,733	3,186	433	2,753	3,167	431	2,736
	셋째자녀 이상	684	93	591	683	93	590	689	94	595	694	94	600	690	94	596
쌍생아(쌍)	소계	140	19	121	139	19	120	141	19	122	142	19	123	141	19	122
	둘째자녀	100	14	86	100	14	86	101	14	87	102	14	88	101	14	87
	셋째자녀 이상	40	5	35	39	5	34	40	5	35	40	5	35	40	5	35
삼태아이상(쌍)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 대상자수 = 출생아수 - 국비지원자수(총 출생아수 중 2016년 지원을 13.6% 적용)

- 예상 지원자수 (이용률 50%적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자수	3,399	3,390	3,425	3,450	3,429	
단태아	소계	3,337	3,329	3,362	3,387	3,366
	첫째자녀	1,685	1,681	1,697	1,710	1,700
	둘째자녀	1,356	1,353	1,367	1,377	1,368
	셋째자녀이상	296	295	298	300	298
쌍생아(쌍)	소계	61	60	62	62	62
	둘째자녀	43	43	44	44	44
	셋째자녀이상	18	17	18	18	18
삼태아이상(쌍)	1	1	1	1	1	

5. 사회보장 전달체계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① 국가 및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소요예산 : **약 19억 7,296만 6천원**

● **예상지원자수 : 총 3,399명**(단태아 3,337명, 쌍태아 이상 62명 / 이용률 50%로 산출)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 제한(1년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50%적용

- ○○○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번째로 높고 2017년 재무제로 선언 후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둘째자녀 확대지원을 위해 12억 1,200만원 자체예산을 확보하였고, 2018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예산관련부서와 20억 이상 자체예산 편성에 잠정 협의하였으므로 국고사업의 지방비 매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모자보건사업이 대부분 소득기준이 있고(청각선별검사 쿠폰발급: 기준중위소득 72%이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영양플러스사업: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확대 지원 함으로써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출생아 수 (A)	국가 지원 (B)	예외지원 (C=A-B *50%)	**이용비율(%)			산출인원(명)			지원금액(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총 계	7,865	1,070	3,399	32	30	38	724	1,441	1,234	393,679	751,445	827,842	
단 태 아	소 계	7,722	1,050	3,337	21	43	36	712	1,428	1,197	384,109	739,338	791,325
	첫째자녀	3,899	530	1,685	4	62	35	61	1,039	585	16,958	482,096	345,735
	둘째자녀	3,139	427	1,356	36	24	40	487	323	546	243,987	202,198	387,114
	셋째자녀 이상	684	93	296	55	22	22	164	66	66	123,164	55,044	58,476
쌍 생 아 (쌍)	소 계	140	19	61	19	19	62	12	12	37	9,570	10,856	36,517
	둘째자녀	100	14	43	13	18	68	6	8	29	4,074	6,784	27,869
	셋째자녀 이상	40	5	18	33	20	47	6	4	8	5,496	4,072	8,648
삼태아이상(쌍)	3	1	1	-	100	-	-	1	-	-	1,251	-	-
합 계							3,399명			1,972,966천원			

* 본인부담금(34~61%)수반 및 대상자 거주기간(180일 이상) 제한으로 서비스 이용률 60% 적용
 ** 이용비율(%) : 2017년 7월 말 기준, 태아유형별, 출산순위별 서비스 이용자수 비율 적용

- ✓ 2013~20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8%
- ✓ 2015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1%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지원율 약 14%
- ✓ 2017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둘째자녀 출산가정 확대, 7월말 기준 지원율 약 26%

② 전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및 전체 지자체 예산 중 사회보장예산(비율) 등에 대한 통계자료

□ 재정자립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62%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00 (50.26)	1,881,559 (1,881,559)	1,166,623 (945,664)	714,936	0	0 (220,959)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3.79	61.44	60.75 (54.82)	61.92 (54.78)	63.42 (58.10)
최종예산	60.52	62.50	58.92 (50.29)	62.00 (50.26)	-

☞ 우리시는 자체세입액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63.42%로 유사단체 평균 51.46%에 비해 11.96%높음.

□ 재정자주도 : 2016년도 우리 ○○○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 75.17%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5.17% (63.43)	1,881,559 (1,881,559)	1,414,428 (1,193,468)	467,132	0	0 (220,959)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78.25	74.14	73.19 (67.26)	74.80 (67.66)	75.39 (70.08)
최종예산	74.52	75.18	74.95 (66.32)	75.17 (63.43)	-

☞ 우리시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보다 5.99% 높은 75.39%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음.

□ 기능별 세출총괄표(2016년 본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예산액	비율
계	15,107	100
일반공공행정	1,346	8.91
공공질서 및 안전	107	0.71
교육	307	2.03
문화 및 관광	855	5.66
환경 보호	1,063	7.04
사회 복지	4,380	28.99
보건	314	2.08
농림해양수산	420	2.78
산업중소기업	92	0.61
수송 및 교통	2,863	18.95
국토 및 지역개발	1,007	6.67
예비비	656	4.34
기타	1,697	11.23

③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 없음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본인·가구원,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또는 복지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입일 확인서류 제출
상담·조사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수, 출산 순위 확인 • ○○○ 전입일 확인(행정정보공공이용 활용)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자격 판정 •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 결과 전송
통지	보건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
상담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후 해당기관과 상담 • 상품선택(선택권 행사), 본인부담금 납부
바우처 생성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과 계약체결 •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사항 등록
서비스 이용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개시일부터 선택 상품기간동안 바우처 이용 • 제공당일 현장에서 서비스 종료 후 바우처 카드로 비용 결제
비용 예탁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비용 중 지원금액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비용 지급	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 계좌로 서비스비용 지급

● 확대지원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부담 증가 및 제공인력 부족

- 제공업체와 간담회 개최, 확대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인력 채용 협조

※ 현재 등록 제공기관 20개소, 제공인력 354명

○○구		○○구		○○구		○○구	
제공기관	제공인력수	제공기관	제공인력수	제공기관	제공인력수	제공기관	제공인력수
20개소	354명	5개소	116명	11개소	168명	4개소	70명

● 업무량 증가에 따른 각 보건소별 인력 증원 요청 ⇨ 인사부서와 협의 후 인력 증원

● 제도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 필요

필요 정보 항목	기능
신청자 및 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열람 대체 및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확인
대상자 가구원의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산정 및 건강보험료 조회 등에 필요
대상자 및 대상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부과액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건강보험 산정구분(직장/지역)	예외지원 대상여부 확인
국민행복카드 보유 여부	바우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국민행복카드 보유여부 조회

④ 재원조달 계획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 재 원 : 일반회계, 시비100%

● 제도 변경 향후 5년간 소요예산

(단위 : 명/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대상 자수	소요 예산	
소 계	3,337	1,914,772	3,329	1,939,244	3,362	1,988,084	3,387	2,032,888	3,366	2,050,220	
단 태 아	첫째 자녀	1,685	844,789	1,681	855,558	1,697	876,421	1,710	896,262	1,700	903,774
	둘째 자녀	1,356	833,299	1,353	844,244	1,367	866,167	1,377	885,783	1,368	893,396
	셋째 자녀 이상	296	236,684	295	239,442	298	245,496	300	250,843	298	253,050
쌍 생 아 (쌍)	소 계	61	56,943	60	56,752	62	59,646	62	60,544	62	61,448
	둘째 자녀	43	38,727	43	39,297	44	40,886	44	41,500	44	42,120
	셋째 자녀 이상	18	18,216	17	17,455	18	18,760	18	19,044	18	19,328
삼태아이상(쌍)	1	1,251	1	1,270	1	1,289	1	1,308	1	1,328	
합계(명, 천원)	3,399	1,972,966	3,390	1,997,266	3,425	2,049,019	3,450	2,094,740	3,429	2,112,996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 중 서비스 물가상승률 1.5% 반영('17년 4월 기준)

● 제도 변경 전·후 예산 증감수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요 예산 (천원)	변경 전	1,128,177	1,141,708	1,172,598	1,198,478	1,209,222
	변경 후	1,972,966	1,997,266	2,049,019	2,094,740	2,112,996
증감률(%)		74.9%	74.9%	74.7%	74.8%	74.7%

- ○○○는 2017년 총 7,848억원에 달했던 채무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모두 상환하여 채무제로 도시로 선언하였고, 계층별 복지증진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지원 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됨.
- 저출산 극복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재정 분담을 위해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 건의

협의제도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15층
(전화 02-6020-3331~9, 팩스 02-6020-3309)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자료 활용
 -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 검색 및 활용
(메인화면 → 전체메뉴 → 사회보장정보 → 자료실 → 발간물)
 - 시스템 주소 : <http://www.ssc.go.kr/main.tiles>